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

# 이슈보고서

Vol.11

## 목 차

제1장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분석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	05
제2장 인구고령화, 빈곤진입률, 그리고 노령층의 취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	60

---

## 제1장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분석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경제는 최근 각 부문 간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는 이러한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경쟁력 저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못지 않게 임금 격차가 존재하여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 상황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임금격차 등 격차 현황과 인력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3,545,473개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5,962,745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전체의 87.9%로 전년대비 4.5% 증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99% 내외로 산업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나,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각각 48.4%, 60.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1인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2013년 기준 171백만원으로 나타남. 기업규

모별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46백만원, 중소기업은 107백만원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2013년 기준 29.3%로 2001년(36.8%)에 비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큰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명목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5%로 아일랜드를 제외한 최하위 수준이며, 대-중소기업 격차가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5.7%), 슬로바키아(8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되다가 그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중소기업의 월 급여는 2015년 기준 평균 2,938,306원으로 대규모 사업체(4,849,460원)의 60.6% 수준이며, 급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2.9%에 머물러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3.2%)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를 보임.

근로형태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은 8,779원으로, 정규직의 68.4%(12,828원)로 나타났고,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은 14,257원으로 정규직의 66.1%(21,568원) 수준으로 나타남.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는 4.9년으로 대규모사업체(10.7년)에 비해 짧게 나타남.

기업규모별 복지수준 격차를 비교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60%대로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복지수혜율과 노조조직률 또한 기업규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의 복지수혜율은 시간외수당 수혜율의 경우만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또한 10년전(62.4%) 보다도 낮은 수준임.

최근 들어 인력 부족률과 인력 미충원율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상반기 기준 인력 부족률은 2.61%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력 미충원율(11.05%)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하지만 이러한 감소 현상은 고용환경 개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기 보다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들의 인력수요 자체가 줄어드는데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기업규모별 인력 이직률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하여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함에 따라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5.2억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의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1인당 평균 4,607만원의 양성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의 경영성과 공유를 활성화하고, 임금과 복지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함.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해야 할 것임. 둘째,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해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성과공유 우수 중소기업 사례를 발굴·포상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셋째, 중소기업 핵심인력 전용의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I 서론

## ■ 우리경제는 최근 각 부문 간 경제성과의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음

- 이는 선도부문의 성과가 후발 부문으로 원활하게 전이되지 못하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음을 의미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는 이러한 양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 중소기업의 경우 양적인 팽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질적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음

-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제조업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대기업에 비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 대-중소기업간에는 노동생산성 못지 않게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투입 자본과 노동의 양과 질, 그리고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생산함수
- 임금격차는 노동생산성과 기술경쟁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근로자에 대한 지불능력이 향상되어 임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의 임금이 높게 유지됨

## ■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임금격차 등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가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함

# II 대·중소기업 현황

## 1. 개요

### ■ 전산업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3,545,473개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5,962,745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3,542,35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0.1%(3,123개)를 차지함.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0.2% 감소
  - 종사자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의 87.9%(14,027,63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12.1%(1,935,109명)를 차지.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4.5%, 대기업은 0.6% 증가

〈표1〉 대·중소기업 현황(2014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A)	중소기업 (B)	대기업 (C)	비중	
				중소기업(B/A)	대기업(C/A)
사업체수 (증가율)	3,545,473 (3.7)	3,542,350 (3.7)	3,123 (-0.2)	99.9	0.1
종사자수 (증가율)	15,962,745 (4.0)	14,027,636 (4.5)	1,935,109 (0.6)	87.9	12.1

※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산업 기준.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2016 재인용.

### ■ 제조업

-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는 2014년 기준 124,369개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3,267,931명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함
  -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4%(123,66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0.6%(708개)를 차지.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4.7%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5.5% 증가
  - 종사자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의 77.4%(2,529,673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22.6%(738,258명)를 차지함.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3.6%, 대기업은 2.0% 증가
-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의 2014년 기준 생산액은 1,548조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며, 부가가치액은 508조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함
  - 중소기업은 전체 생산액의 48.3%(748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51.7%(800조원)를 차지함.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2.8%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3.1% 감소
  - 중소기업은 전체 부가가치액의 51.2%(508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48.8%(248조원)를 차지함.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6.1%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3.2% 감소함

〈표2〉 제조업-종사자 5인 이상(2014년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

구분	전체 (A)	중소기업 (B)	대기업 (C)	비중	
				중소기업 (B/A)	대기업 (C/A)
사업체수 (증가율)	124,369 (4.7)	123,661 (4.7)	708 (5.5)	99.4	0.6
종사자수 (증가율)	3,267,931 (3.2)	2,529,673 (3.6)	738,258 (2.0)	77.4	22.6
생산액 (증가율)	15,483,633 (-0.3)	7,482,101 (2.8)	8,001,532 (-3.1)	48.3	51.7
부가가치 (증가율)	5,080,850 (1.3)	2,600,115 (6.1)	2,480,735 (-3.2)	51.2	48.8

※주: 1.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제조업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2016 재인용.

## 2.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 전산업

- 전산업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476,073개의 사업체가 증가함
  - 이 중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9년 3,066,484개에서 2014년 3,542,350개로 15.5%(475,866개)가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사업체는 2009년 2,916개에서 2014년 3,123개로 7.1%(207개) 증가함

〈표3〉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전산업)

(단위: 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09~'14)
사업체수	전산업	3,069,400	3,125,457	3,234,687	3,654,320	3,418,993	476,073 (15.5)
	중소기업 (비중)	3,066,484 (99.9)	3,122,332 (99.9)	3,231,634 (99.9)	3,651,404 (99.9)	3,415,863 (99.9)	475,866 (15.5)
	대기업 (비중)	2,916 (0.1)	3,125 (0.1)	3,053 (0.1)	2,916 (0.1)	3,130 (0.1)	207 (7.1)
종사자수	전산업	13,398,497	14,135,234	14,534,230	14,891,162	15,344,860	2,564,248 (19.1)
	중소기업 (비중)	11,751,022 (87.7)	12,262,535 (86.8)	12,626,746 (86.9)	13,059,372 (87.7)	13,421,594 (87.5)	2,276,614 (19.4)
	대기업 (비중)	1,647,475 (12.3)	1,872,699 (13.2)	1,907,484 (13.1)	1,831,790 (12.3)	1,923,266 (12.5)	287,634 (17.5)

※주: 1.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증감('09~'14)은 2009년 대비 증감이며, 아래 ( )는 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2016 재인용.

### ● 같은 기간 동안 전산업 기준으로 2,564,248명의 일자리가 증가함

-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에 11,751,022명에서 2014년 14,027,636명으로 19.4%(2,276,61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대기업은 2009년 1,647,475명에서 2014년 1,935,109명으로 17.5%(287,634명) 증가함
- 기업규모별로 사업체와 종사자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9년 3.8명에서 2014년 4.0명으로 0.2명 증가하였고, 대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9년 565.0명에서 2014년 619.6명으로 사업체당 54.6명 증가

### ■ 전산업

- 제조업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12,647개의 사업체가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9년 111,126개에서 2014년 123,661개로 11.3%(12,535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사업체는 2009년 596개에서 2014년 708개로 18.8%(112개) 증가함
- 같은 기간에 제조업 기준으로 47만명의 일자리가 증가함
  -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에 215만명에서 2014년 253만명으로 17.7%(3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대기업은 2009년 65만명에서 2014년 74만명으로 13.9%(9만명) 증가함
- 기업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9년 19.4명에서 2014년 20.5명으로 1.1명 증가하였고, 대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2009년 1,087.2명에서 2014년 1,042.4명으로 사업체당 44.8명 감소

〈표4〉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제조업)

(단위: 개, 천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09~'14)
사업체수	제조업	111,722	113,515	114,651	116,174	118,773	12,647 (11.3)
	중소기업 (비중)	111,126 (99.5)	112,897 (99.5)	114,020 (99.4)	115,500 (99.4)	118,102 (99.4)	12,535 (11.3)
	대기업 (비중)	596 (0.5)	618 (0.5)	631 (0.6)	674 (0.6)	671 (0.6)	112 (18.8)
종사자수	제조업	2,798	2,968	3,030	3,095	3,166	470 (16.8)
	중소기업 (비중)	2,150 (76.8)	2,289 (77.1)	2,323 (76.7)	2,364 (76.4)	2,442 (77.1)	380 (17.7)
	대기업 (비중)	648 (23.2)	679 (22.9)	707 (23.3)	731 (23.6)	724 (22.9)	90 (13.9)

※주: 1.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증감('09~'14)은 2009년 대비 증감이며, 아래 ( )는 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2016 재인용.

### 3. 생산액 및 부가가치

#### ■ 제조업

- 최근 5년간 제조업 생산액은 1,167.8조원 → 1,548.4조원으로 32.6%(380.6조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2009년 555.9조원에서 2014년 748.2조원으로 34.6%(192.3조원) 증가하였고, 대기업의 생산액은 2009년 612조원에서 2014년 800.2조원으로 30.8% (188.2조원) 증가
-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392.7조원 → 508.1조원으로 29.4%(115.4조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액은 198.2조원 → 260.0조원으로 31.2%(61.8조원)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부가가치액은 194.5조원 → 248.1조원으로 27.6%(53.6조원) 증가

(표5)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변화(제조업)

(단위: 조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 ('09-'14)
사업체수	제조업	1,167.8	1,386.6	1,560.1	1,568.2	1,553.7	380.6 (32.6)
	중소기업 (비중)	555.9 (47.6)	651.4 (47.0)	726.4 (46.6)	717.2 (45.7)	728.0 (46.9)	192.3 (34.6)
	대기업 (비중)	612.0 (52.4)	735.2 (53.0)	833.6 (53.4)	851.0 (54.3)	825.7 (53.1)	188.2 (30.8)
종사자수	제조업	392.7	454.8	501.6	502.2	501.4	115.4 (29.4)
	중소기업 (비중)	198.2 (50.5)	215.7 (47.4)	237.4 (47.3)	239.3 (47.7)	245.1 (48.9)	61.8 (31.2)
	대기업 (비중)	194.5 (49.5)	239.0 (52.6)	264.2 (52.7)	262.9 (52.3)	256.3 (51.1)	53.6 (27.6)

※주: 1.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증감('09~'14)은 2009년 대비 증감이며, 아래 ( )는 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재편·가공: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2016 재인용.

### 4. 해외 주요국 비교

#### ■ 전산업

- 주요국의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은 99% 내외로 산업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
  - 영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99.9%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대만의 중소기업 비중은 97.6%로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87.9%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임
  -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은 종사자 수 비중이 각각 48.4%, 60.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96명으로, 영국(2.90명)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표6) 주요국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전산업)

(단위: 천개, 천명)

구분	사업체수(A)		종사자수(B)		사업체당 종사자수 (B/A)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국	3,542	(99.9)	14,028	(87.9)	3.96
일본	5,368	(99.0)	42,065	(75.8)	7.83
대만	1,353	(97.6)	8,669	(78.3)	6.41
미국	5,708	(99.7)	56,063	(48.4)	9.82
영국	5,382	(99.9)	15,612	(60.3)	2.90

※주: 1. 대만, 미국, 독일, 영국은 기업체 기준 통계임  
 2. 한국, 대만은 2014년 기준, 미국, 일본은 2012년 기준, 영국은 2015년 기준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015

■ 제조업

- 주요국 중소제조업 사업체수 비중은 99% 내외의 수준을 보임
  - 영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99.6%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대만의 중소 제조업 비중은 96.2%로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은 77.4%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임
  - 중소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은 종사자 수 비중이 각각 45.5%, 5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영국의 중소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5.53명으로, 주요국에 비해 1개 중소기업당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5명으로 미국(2.01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7〉 주요국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제조업)

(단위: 개, 천명)

구분	사업체수(A)		종사자수(B)		사업체당 종사자수 (B/A)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 국	123,661	(99.4)	2,530	(77.4)	2.05
일 본	213,156	(98.6)	5,154	(69.4)	2.42
대 만	141,817	(96.2)	N/A	N/A	N/A
미 국	252,737	(98.6)	5,087	(45.5)	2.01
영 국	274,325	(99.6)	1,518	(57.5)	5.53

※주: 1. 대만, 미국, 영국은 기업체 기준 통계임  
 2. 한국, 대만은 2014년 기준 미국, 일본은 2012년 기준, 영국은 2015년 기준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015

# Ⅲ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

## 1. 노동생산성 측정방법

- 노동생산성은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누어 측정
  - 일반적으로 산출량으로 부가가치를 사용하고 노동투입량으로는 노동시간과 취업자수를 모두 이용하며 각각 시간당 노동생산성,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으로 구분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노동시간(또는 취업자수)}}$$

- 이 때 부가가치는 국가별로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산업별 부가가치를 사용
  - 국민계정에는 당해년도 가격기준의 명목 부가가치와 특정 기준년 가격기준의 실질 부가가치가 함께 제공되고 있음
  - 연도별 증가율 산출을 위해서는 물가간섭이 제거된 실질 부가가치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수준과 변화 동향 분석에 실질 부가가치를 이용하고 있음

## 2.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 ■ 대·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1인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2013년 기준 171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불변 부가가치 증가율(-1.2%)과 노동투입 증가율(1.3%)에 기인한 결과임
  - 제조업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년 이후 부진한 상황이며, 2012년(-1.1%)에 비해 2013년(-2.4%)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2013년 기준 346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2012년에 1.6% 감소하였던 추세가 2013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노동생산성 감소는 부가가치 증가율(-3.7%)이 노동투입 증가율(-2.9%)을 하회한 결과로 분석됨
-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수준이 2013년 기준 107백만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0.9% 감소하여 2012년 0.2% 감소에 비해 노동생산성 감소폭이 확대됨
  - 이는 부가가치 증가율(1.8%)을 상회하는 노동투입 증가율(2.7%)로 인하여 생산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분석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2013년 기준 29.3%로, 2001년(36.6%)에 비해 격차가 확대됨
  - 이러한 현상은 2001년(36.6%), 2007년(33.1%), 2013년(29.4%)으로 이어져 2000년 이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8)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변화(제조업)

(단위: 2010 불변가격 백만원, %)

년도	제조업 전체		중사자수(B)		중소기업		격차(B/A)
	노동생산성	증가율	노동생산성(A)	증가율	노동생산성(B)	증가율	
2001	103	-	190		70	-	36.6
2002	111	7.4	214	125	73	5.4	34.3
2003	115	4.3	219	21	78	6.5	35.7
2004	130	12.4	253	15.5	84	7.9	33.4
2005	133	2.4	254	0.5	89	5.9	35.2
2006	142	7.1	268	5.6	96	7.0	36.7
2007	149	5.0	296	10.4	98	2.5	33.1
2008	166	11.3	334	12.9	107	8.9	32.0
2009	160	-4.0	317	-4.9	105	-2.1	32.9
2010	168	4.9	358	12.9	103	-1.2	28.8
2011	178	6.0	373	4.2	108	4.9	29.0
2012	176	-1.1	367	-1.6	108	-0.2	29.5
2013	171	-2.4	364	-0.8	107	-0.9	29.4
'01-'13	-	3.9	-	5.0	-	3.3	32.7

※주: 1. 격차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의미 (대기업=100)  
2. 300인 미만은 중소기업, 3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구분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 ■ 해외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비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큰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명목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29.5%로 아일랜드를 제외한 최하위 수준이며, 대·중소기업 격차가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5.7%), 슬로바키아(85.4%), 에스토니아(7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이들 국가들은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우수하여 생산성 격차가 작은 나라와는 다른 성격을 보임

- 프랑스(70.0%), 영국(61.2%), 독일(60.4%) 등 OECD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60~70%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비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9) OECD 국가별 제조업 명목 노동생산성(2012년)

(단위: 유로, 자국화폐, %)

국가	중소기업(A)	대기업(B)	격차(A/B)(%)
룩셈부르크	65	76	85.7
슬로바키아	23	27	85.4
에스토니아	21	28	76.8
핀란드	58	77	76.2
슬로베니아	29	40	73.0
노르웨이	71	100	71.5
이탈리아	54	77	70.1
프랑스	55	79	70.0
체코	60	89	67.0
벨기에	77	117	66.0
오스트리아	63	99	63.7
영국	47	77	61.2
독일	51	84	60.4
스웨덴	60	99	60.1
스페인	47	78	60.0
폴란드	78	131	59.5
덴마크	45	77	58.3
네덜란드	75	128	58.2
포르투갈	22	42	51.8
그리스	35	74	47.7
헝가리	48	120	39.9
일본	21	57	37.8
아일랜드	97	332	29.2
한국	109	372	29.5

※주: 1. 한국은 사업체 기준 자료이며 그 외 국가는 기업체 기준 자료임  
 2. 유럽의 경우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 25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나 한국과 일본을 300인을 기준으로 구분됨  
 3. 명목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명목 부가가치로 측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부가가치 대신 명목출하액(매출액)으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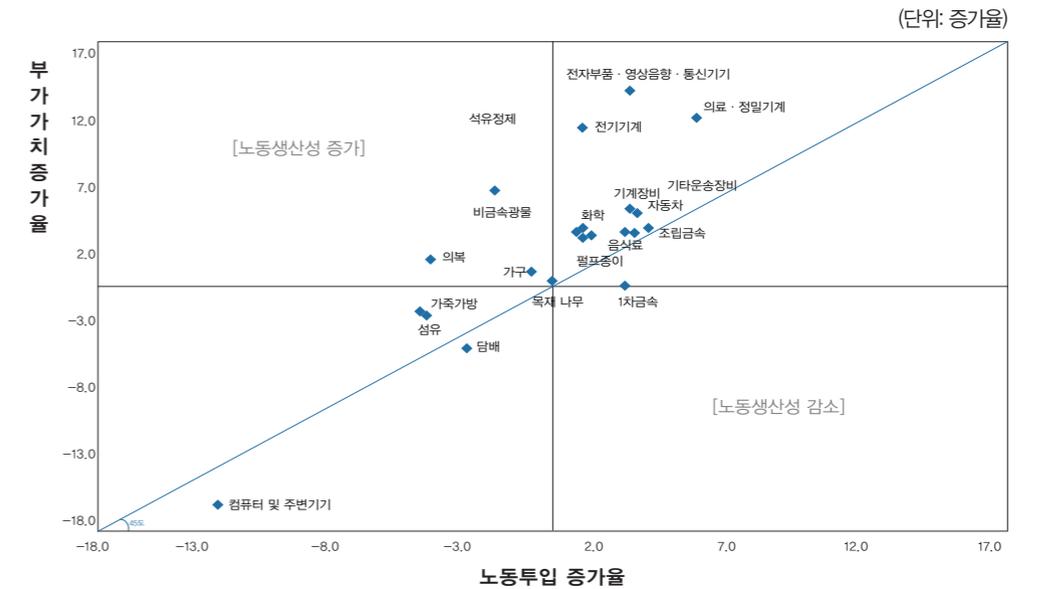
※자료: OECD,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SIC Rev. 4); 일본 경제산업성 공업통계조사 기업통계편: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재인용.

### 3. 업종별 노동생산성

#### ■ 제조업

- 제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바탕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해 보면, 2001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기계 등 17개 업종임
  - 이 가운데 노동투입이 증가한 업종은 의료·정밀·광학기기, 조립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12개 업종에서 노동투입이 증가함
  - 한편 섬유, 봉제의복, 가죽가방 및 신발, 석유정제, 가구 및 기타제품 등 5개 업종의 노동투입은 감소
- 반면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업종은 담배, 목재나무, 1차금속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3개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1차금속 업종만 노동투입이 증가하였고 이외 업종은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이 동반 하락함

[그림] 제조업 부가가치 및 노동투입 증가율 변화(200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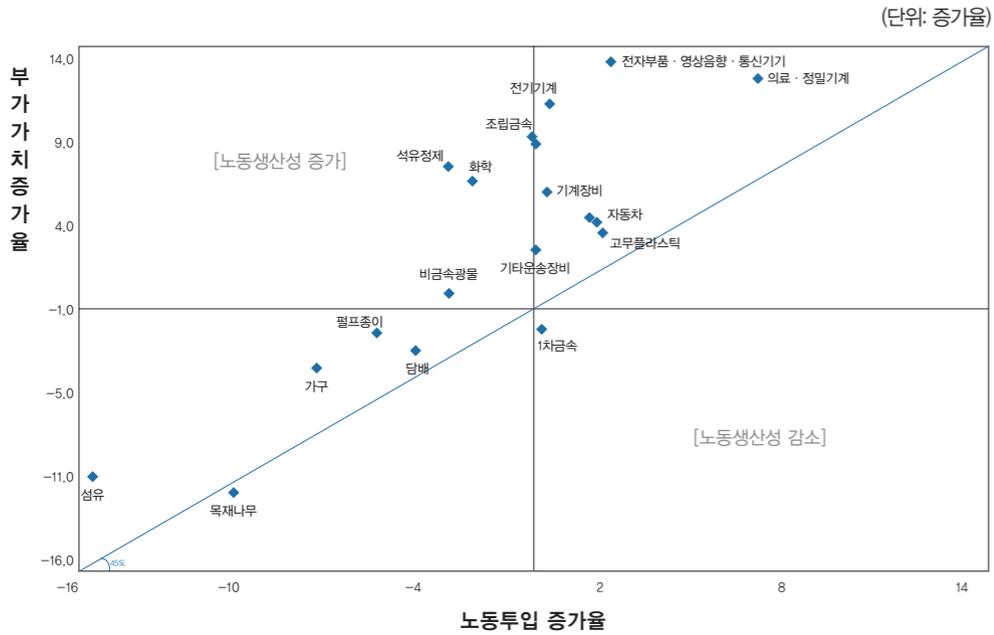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 대기업

-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기계 등 19개 업종으로 나타남
  - 의료·정밀·광학기기, 전자부품·통신장비, 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9개 업종에서 노동투입이 증가하였고, 담배, 섬유, 펄프종이, 석유정제, 화학, 비금속광물, 가구 및 기타제품 등 7개 업종의 노동투입은 감소
-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업종은 목재나무, 1차금속,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이 가운데 1차금속 업종만 노동투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외 업종에서는 노동투입이 감소함

[그림2] 대기업 업종별 부가가치 및 노동투입 증가율 변화(200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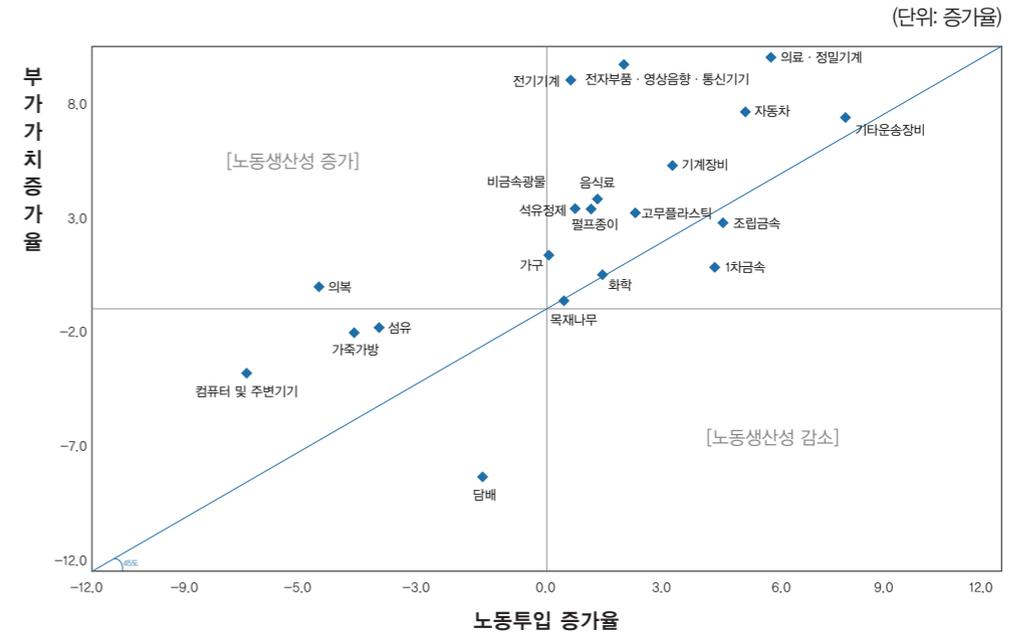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 중소기업

- 유럽계 이주민들의 경우 – 동유럽 및 남유럽 일부국가들은 입국 시 일정수준의 제한이나 규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 1880년대부터 1차세계대전 당시까지 거의 제한없이 미국 내 이주가 이루어졌음.
  - 의료정밀 광학기기,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장비 등 14개 업종에서 노동투입이 증가한 반면, 섬유, 의복, 가죽가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4개 업종은 노동투입이 감소
-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중소기업 업종은 담배, 목재나무, 1차금속, 조립금속으로, 이 중 담배를 제외한 3개 업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하였지만 노동투입은 증가함

[그림3] 중소기업 업종별 부가가치 및 노동투입 증가율 변화(2001~2013년)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표10〉 대·중소기업 업종별 부가가치, 노동투입, 노동생산성 증가율(2001~2013년)

(단위: %)

구분	대기업(B)			중소기업		
	부가가치	노동투입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투입	노동생산성
음·식료	5.6	0.6	5.0	5.0	1.7	0.6
담배	-3.1	-4.3	1.2	-7.9	-1.6	-6.3
섬유제품	-10.9	-15.4	4.6	-1.5	-3.8	2.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7.9	0.1	7.8	1.1	-5.2	6.3
가죽가방 및 신발	-	-	-	-1.7	-4.5	2.7
목재 및 나무제품	-10.9	-10.1	-0.8	0.4	0.4	-0.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	-5.4	3.3	4.4	1.6	2.8
코크스, 석유정제 및 핵연료	6.7	-2.3	9.1	4.5	1.0	3.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9	-1.5	7.4	1.8	1.6	0.2
비금속광물제품	3.1	1.9	1.2	4.2	2.8	1.5
제1차금속산업	1.0	-2.2	3.2	4.5	1.0	3.6
조립금속제품	-1.2	0.3	-1.5	2.1	4.0	-1.9
기계 및 장비	8.5	0.0	8.5	3.5	4.1	-0.6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4.4	1.3	3.1	6.7	3.0	3.7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3.6	-31.6	-8.0	-3.3	-7.1	3.8
전자부품,영상음향 통신장비	11.3	0.9	10.5	10.5	0.8	9.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4.2	3.7	10.5	10.9	1.9	9.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7	7.1	6.6	11.4	5.3	6.1
운송장비	4.2	1.7	2.5	8.9	4.4	4.5
가구 및 기타제품	2.9	0.2	2.7	8.3	6.7	1.6
가구	-3.5	-7.7	4.2	2.1	-0.1	2.2

※주: 가죽가방업종 대기업의 부가가치, 노동투입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측치로 간주함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2015.

## 4. 해외 주요국 비교

### ■ 시간당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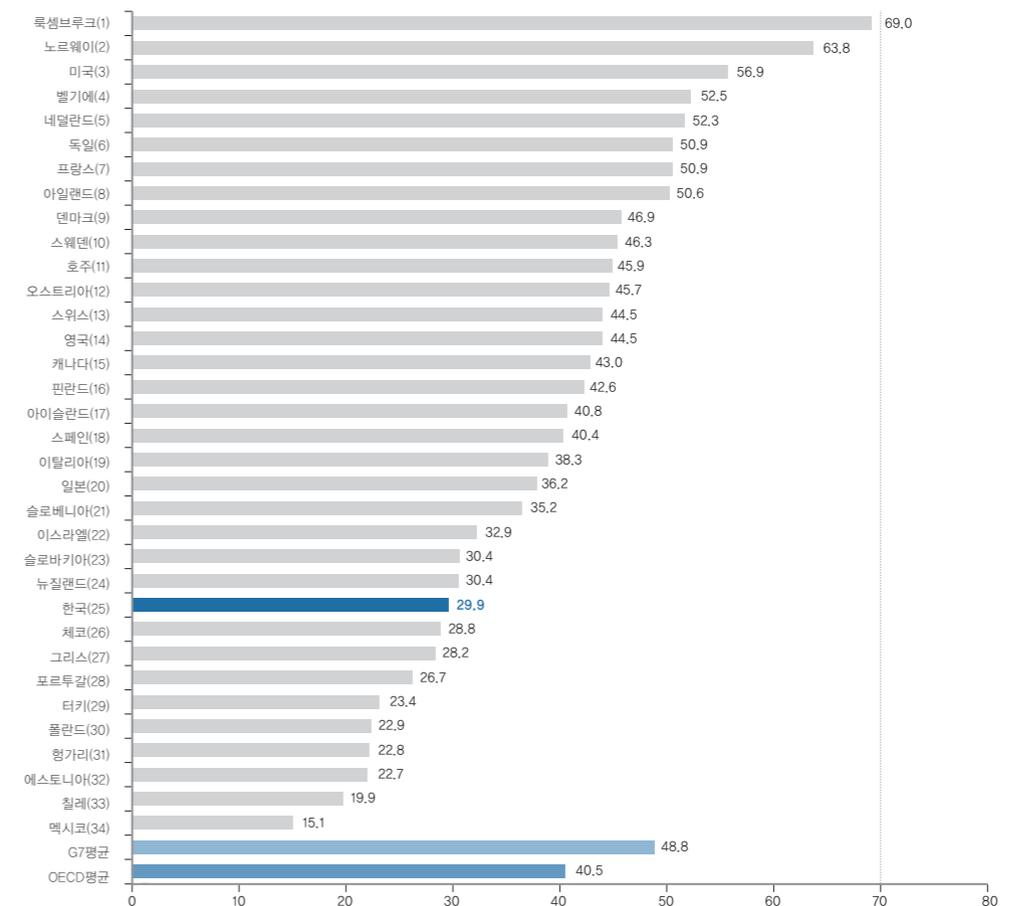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PPP적용)이며, OECD 34개국 중

25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순위 상으로는 2012년 26위였던 것에서 1단계 상승

-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3위, 독일 6위, 프랑스 7위, 영국 14위, 일본 20위 등 주요 선진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남
- 슬로바키아(30.4달러), 뉴질랜드(30.4달러), 체코(28.8달러), 그리스(28.2달러)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그림4〉 OECD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2013년)

(단위: PPP적용 US\$)



※주: 노동생산성은 각국의 2013년 실질GDP(2005년 기준)와 노동시간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15.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OECD 국가들과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는 한국의 2배가 넘고,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멕시코는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표11〉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13년)  
(단위: PPP적용 US\$, 지수(한국=100.0))

국가	노동생산성	지수	국가	노동생산성	지수
한국	299	100.0	에스토니아	227	76.0
그리스	282	94.3	영국	445	148.9
네덜란드	523	175.1	오스트리아	457	153.0
노르웨이	638	213.8	이스라엘	329	110.2
뉴질랜드	304	101.8	이탈리아	383	128.1
덴마크	469	157.0	일본	362	121.2
독일	509	170.5	체코	288	96.3
룩셈부르크	690	231.0	칠레	199	66.5
멕시코	151	50.6	캐나다	430	144.0
미국	569	190.5	터키	234	78.4
벨기에	525	175.8	포르투갈	267	89.4
스웨덴	463	155.0	폴란드	229	76.5
스위스	445	149.0	프랑스	509	170.3
스페인	404	135.3	핀란드	426	142.5
슬로바키아	304	101.9	헝가리	228	76.4
슬로베니아	352	118.0	호주	459	153.6
아이슬란드	408	136.6	G7 평균	488	163.4
아일랜드	506	169.5	OECD 평균	405	135.7

※주: 노동생산성은 각국의 2013년 실질GDP(2005년 기준)와 노동시간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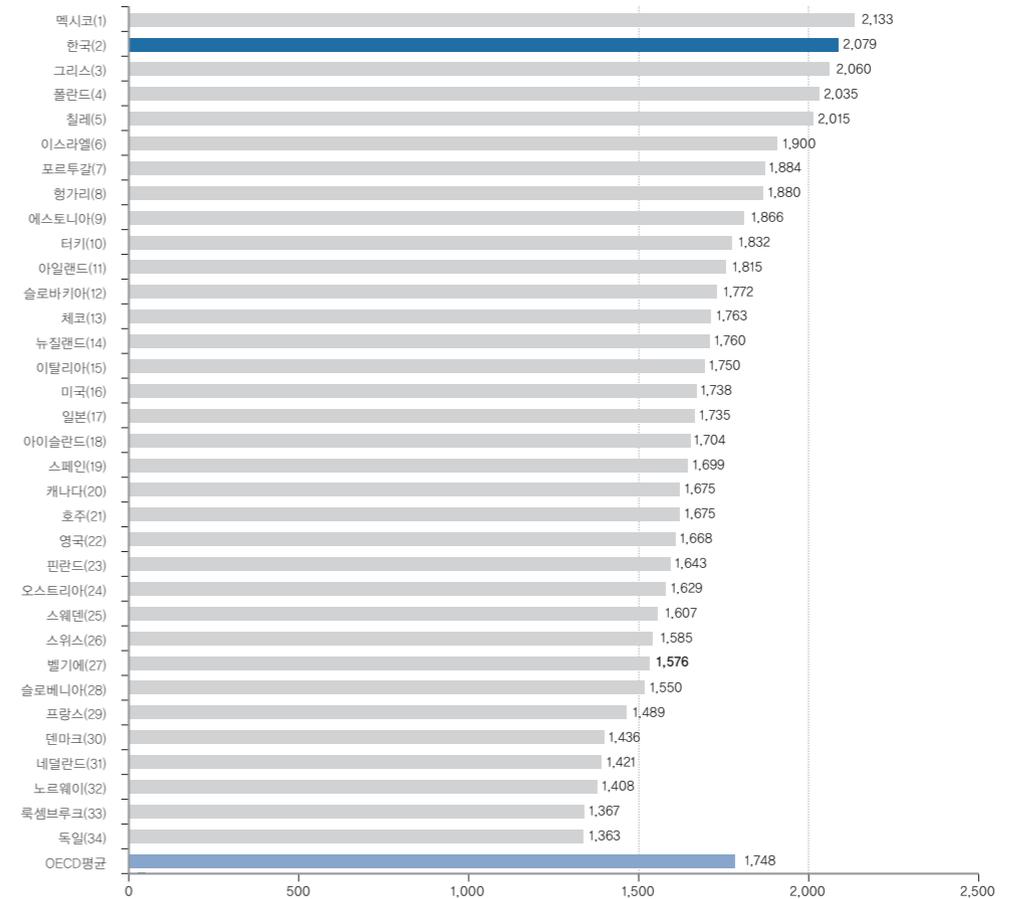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079시간으로 OECD 주요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연간 331시간 긴 노동시간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에 비해서는 연간 716시간 긴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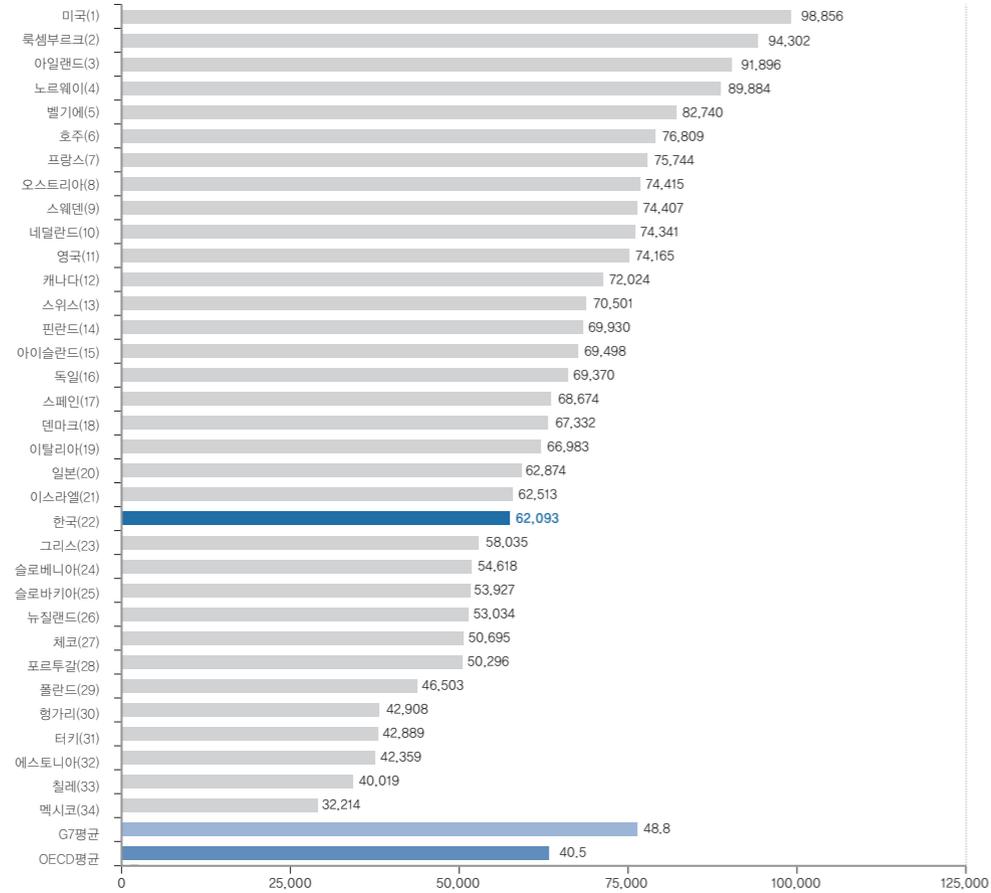
-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특성으로 인해 OECD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생산성 순위가 시간당 노동생산성보다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5] OECD국가의 취업자 1인당 평균 연간 노동시간 비교(2013년)  
(단위: 시간)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15.

[그림6] OECD국가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비교(2013년)



※주: 노동생산성은 각국의 2013년 실질GDP(2005년 기준)와 취업자수로 계산함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15.

(단위: PPP적용 US\$)

- 실질부가가치(2005년 기준)와 취업자수로 측정된 노동생산성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62,093달러(PPP 적용)로 OECD 34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2012년과도 동일한 순위임(<그림 3-6> 참고)
- OECD 국가의 2013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98,856달러로 가장 높고, 이어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의 순으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남

- 일본(20위), 이스라엘(21위), 그리스(23위)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임
- OECD 국가들 중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이며, 헝가리(30위), 터키(31위), 에스토니아(32위), 칠레(33위) 등의 국가들도 하위권에 위치해 있음

<표12>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13년)

(단위: PPP적용 US\$, 지수(한국=100.0))

국가	노동생산성	지수	국가	노동생산성	지수
한국	62,093	100.0	에스토니아	42,359	68.2
그리스	58,035	93.5	영국	74,165	119.4
네덜란드	74,341	119.7	오스트리아	74,415	119.8
노르웨이	89,884	144.8	이스라엘	62,513	100.7
뉴질랜드	53,034	85.4	이탈리아	66,983	107.9
덴마크	67,332	108.4	일본	62,874	101.3
독일	69,370	111.7	체코	50,695	81.6
룩셈부르크	94,302	151.9	칠레	40,019	64.4
멕시코	32,214	51.9	캐나다	72,024	116.0
미국	98,856	159.2	터키	42,889	69.1
벨기에	82,740	133.3	포르투갈	50,296	81.0
스웨덴	74,407	119.8	폴란드	46,503	74.9
스위스	70,501	113.5	프랑스	75,744	122.0
스페인	68,674	110.6	핀란드	69,930	112.6
슬로바키아	53,927	86.8	헝가리	42,908	69.1
슬로베니아	54,618	88.0	호주	76,809	123.7
아이슬란드	69,498	111.9	G7 평균	81,260	130.9
아일랜드	91,896	148.0	OECD 평균	70,845	114.1

※주: 노동생산성은 각국의 2013년 실질GDP(2005년 기준)와 취업자수로 계산함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15.

# IV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 1.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 ■ 전체임금

- 기업규모가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이런 원인들의 구성과 내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천하였음
  - 국가경제발전전략, 산업구조, 산업조직, 산업기술혁신전략, 노동시장, 계열하도급관계, 금융제도, 정부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변화를 초래하였음
- 이러한 멕시코인들에 대한 정책적 시각은 1930년대 들어 시작된 대공황 (Great Depression)으로 대두된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함.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는 내국인들로 하여금 멕시코인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과 연계되어 반멕시코 정서(anti-Mexican sentiments)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전미노조연합(American Federation of Labor)과 같은 기업노조와 보수정치인들의 공격적인 로비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음 (Chomsky, 2014; FitzGerald & Cook-Martin, 2014; Tichenor, 2013).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되다가 그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월 급여는 평균 2,938,306원으로 대규모 사업체(4,849,460원)의 60.6% 수준이며, 급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대·중소기업간 급여 격차 : 1,515,394원('08) → 1,625,995원('12) → 1,911,154원('15)

〈표13〉 기업규모별 전체임금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년도	전체	중소규모(5 ~ 299인)	대규모(300인 이상)	비율(대기업기준)
2008	2,568,838	2,270,858	3,786,252	60.0
2009	2,636,260	2,338,036	3,809,193	61.4
2010	2,816,188	2,479,364	4,140,084	59.9
2011	2,843,545	2,511,717	4,154,150	60.5
2012	2,995,471	2,663,861	4,289,856	62.1
2013	3,110,992	2,764,054	4,446,866	62.2
2014	3,189,995	2,835,501	4,678,408	60.6
2015	3,300,091	2,938,306	4,849,460	60.6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전체임금총액은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를 합산한 수치임  
 3. 임금은 세금공제 이전 임금  
 4.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2015년 기준 전체 임금수준은 전년대비 2.7%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3.0%) 보다도 낮은 수준
  -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2.9%에 머물러 2014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3.2%로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 둔화가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2015년에 3,300,091원으로 2008년(2,568,838원) 대비 28.5%(731,253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월 평균급여는 같은 기간 중 29.4%(667,448원) 증가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28.1%(1,063,208원) 증가하여 임금 상승률로는 중소기업이 1.3%p 높지만, 임금 인상분은 대규모 사업체가 395,760원 많았음
- 전체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중소규모 사업체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6,965원이며, 이는 대규모 사업체의 68.4% 수준으로 임금 격차가 전년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14〉 기업규모별 전체임금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년도	임금상승률			월 평균임금				시간당 평균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2008	-	-	-	2,568,838	2,270,868	3,786,252	60.0	14,538	12,801	21,785	70.2
2009	3.0	3.4	0.7	2,636,260	2,338,036	3,809,193	61.4	14,970	13,232	21,930	65.7
2010	6.5	5.4	9.6	2,816,188	2,479,364	4,140,084	59.9	15,938	13,945	24,042	72.4
2011	1.2	1.8	-0.7	2,843,545	2,511,717	4,154,150	60.5	16,129	14,199	23,874	68.1
2012	6.6	7.1	5.1	2,995,471	2,663,861	4,289,856	62.1	17,186	15,205	25,087	65.0
2013	4.9	4.9	4.3	3,110,992	2,764,054	4,446,866	62.2	18,024	15,950	26,173	64.1
2014	3.3	3.4	5.8	3,189,995	2,835,501	4,678,408	60.6	18,611	16,485	27,699	68.0
2015	2.7	2.9	3.2	3,300,091	2,938,306	4,849,460	60.6	19,120	16,965	28,577	68.4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전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5~299인, 대규모는 300인 이상  
 3.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4. 상대임금은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5.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증감율로 시간당 평균임금 기준  
 6. 시간당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전체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상용임금

- 2015년 기준 상용임금 수준은 전년대비 2.6%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상용임금 상승률은 2.6%에 머물러 2014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3.0%로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 둔화가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업체의 월 평균 상용임금은 2015년에 3,489,618원으로 2008년 대비 28.5% (731,253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월 평균급여는 같은 기간 중 24.8%(617,781원) 늘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28.0%(1,095,929원)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인상율이 더 높게 나타남
- 2015년 기준 상용임금 수준은 전년대비 2.6%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표15〉 기업규모별 상용임금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구분	임금상승률			월 평균상용임금				시간당 평균상용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2008	-	-	-	2,801,735	2,492,502	3,920,776	63.6	15,161	13,343	22,126	60.3
2009	2.4	2.8	0.5	2,863,257	2,557,371	3,934,278	65.0	15,527	13,712	22,228	61.7
2010	6.3	5.1	9.8	3,047,336	2,698,841	4,291,436	62.9	16,499	14,417	24,397	59.1
2011	0.5	1.0	-0.7	3,018,720	2,675,010	4,272,934	62.6	16,577	14,562	24,237	60.1
2012	6.6	7.1	5.1	3,178,160	2,834,116	4,423,894	64.1	17,666	15,598	25,483	61.2
2013	4.8	4.9	4.3	3,298,667	2,937,997	4,583,214	64.1	18,521	16,359	26,569	61.6
2014	3.0	3.1	5.5	3,377,970	3,008,213	4,826,509	62.3	19,074	16,872	28,029	60.2
2015	2.6	2.6	3.0	3,489,618	3,110,283	5,016,705	62.0	19,561	17,318	28,881	60.0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전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5~299인, 대규모는 300인 이상  
 3.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4. 상대임금은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5.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증감율로 시간당 평균임금 기준  
 6. 시간당 평균상용임금은 월 평균상용임금을 상용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상용정액임금

- 2015년 기준 상용정액임금 수준은 전년대비 2.4% 상승하여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상용정액임금 상승률은 2.1%에 머물러 2009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3.9%로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이 36.9% 둔화되었음
- 전체 사업체의 월 평균 상용정액임금은 2015년에 2,748,504원으로 2008년 대비 33.6% (691,122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월 평균급여는 같은 기간 중 33.8%(650,590원) 늘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35.9%(907,478원)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인상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상용소정실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6,597원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70.9% 수준이며, 이는 상용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과 비교하여 10.9%p 높은 수준임

〈표16〉 기업규모별 상용정액임금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구분	임금상승률			월 평균상용정액임금				시간당 평균상용정액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2008	-	-	-	2,057,382	1,926,686	2,530,338	76.1	12,181	11,202	16,086	69.6
2009	3.7	3.6	2.8	2,138,912	1,995,318	2,641,688	75.5	12,634	11,601	16,542	70.1
2010	5.1	4.8	6.3	2,234,337	2,081,762	2,779,015	74.9	13,276	12,160	17,578	69.2
2011	4.7	5.7	2.2	2,341,027	2,203,784	2,841,837	77.5	13,893	12,858	17,964	71.6
2012	6.3	6.8	4.9	2,469,814	2,333,117	2,964,772	78.7	14,772	13,732	18,836	72.9
2013	5.4	5.5	4.2	2,577,842	2,433,250	3,092,816	78.7	15,567	14,492	19,624	73.8
2014	4.1	4.1	6.5	2,660,111	2,503,984	3,271,741	76.5	16,210	15,084	20,892	72.2
2015	2.4	2.1	3.9	2,748,504	2,577,276	3,437,816	75.0	16,597	15,396	21,717	70.9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전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5~299인, 대규모는 300인 이상  
 3.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4. 상대임금은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5.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증감율로 시간당 평균임금 기준  
 6. 시간당 평균상용정액임금은 월 평균상용정액임금을 상용소정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상용초과임금

- 2015년 기준 상용초과임금 수준은 전년대비 8.3% 상승하여 2009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상용초과임금 상승률은 6.6%에 머물러 대규모 사업체 (11.9%)의 절반 수준에 그쳤음
- 전체 사업체의 월 평균 상용초과임금은 2015년에 183,544원으로 2008년 대비 21.2%(37,912원) 증가함  
 · 중소기업의 월 평균 초과급여는 같은 기간 중 20.1%(30,590원) 늘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28.6%(77,558원)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초과급여 수준은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남
- 상용초과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6,908원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66.4% 수준이며, 이는 상용정액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대임금과 비교하여 4.5%p 차이를 보임

〈표17〉 기업규모별 상용초과임금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구분	임금상승률			월 평균상용초과임금				시간당 평균상용초과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전체	중소 규모	대 규모	상대 임금
2008	-	-	-	178,515	152,888	271,249	56.4	11,227	10,330	13,631	75.8
2009	3.0	3.3	3.5	174,590	154,776	243,965	63.4	11,562	10,674	14,102	75.7
2010	3.3	2.9	6.6	195,836	175,762	267,500	65.7	11,941	10,985	15,028	73.1
2011	10.5	11.3	4.4	179,411	150,331	285,522	52.7	13,192	12,222	15,688	77.9
2012	7.4	7.9	8.0	181,290	155,547	274,502	56.7	14,163	13,182	16,945	77.8
2013	4.1	3.0	7.0	184,292	160,204	270,082	59.3	14,743	13,577	18,126	74.9
2014	5.9	4.0	11.7	201,445	172,250	315,818	54.5	15,616	14,119	20,245	69.7
2015	8.3	6.6	11.9	216,427	183,544	348,807	52.6	16,908	15,045	22,650	66.4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전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5~299인, 대규모는 300인 이상  
 3.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4. 상대임금은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5.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증감율로 시간당 평균임금 기준  
 6. 시간당 평균상용초과임금은 월 평균상용초과임금을 상용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상용특별급여

- 2015년 기준 상용특별급여 수준은 524,686원으로 전년대비 1.6% 상승  
 ·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상용특별급여는 349,463원으로 2008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1,230,082원으로 2008년 보다 110,893원 증가함
-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의 상용특별급여는 28.4% 수준을 보이며 2008년 대비 격차가 8.5%p 더 벌어졌음

〈표18〉 기업규모별 상용특별급여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년도	전체	중소규모(5 ~ 299인)	대규모(300인이상)	비율(대기업기준)
2008	565,839	412,927	1,119,189	36.9
2009	549,755	407,277	1,048,625	38.8
2010	617,163	441,317	1,244,921	35.4
2011	498,282	320,806	1,145,575	28.0
2012	527,056	345,452	1,184,621	29.2
2013	536,533	344,543	1,220,316	28.2
2014	516,414	331,978	1,238,950	26.8
2015	524,686	349,463	1,230,082	28.4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 대비 상용특별급여는 15% 수준
  - 중소기업은 11.2%로 대규모 기업(24.5%)과 비교했을 때 13.3%p 차이를 보임

〈표19〉 기업규모별 상용임금총액 대비 상용특별급여 변화(월급여 기준)

(단위: 원, %)

년도	전체	중소규모(5 ~ 299인)	대규모(300인이상)	비율(대기업기준)
2008	20.2	16.6	28.5	12.0p
2009	19.2	15.9	26.7	10.7p
2010	20.3	16.4	29.0	12.7p
2011	16.5	12.0	26.8	14.8p
2012	16.6	12.2	26.8	14.6p
2013	16.3	11.7	26.6	14.9p
2014	15.3	11.0	25.7	14.6p
2015	15.0	11.2	24.5	13.3p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시계열용 자료로 재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각연도 재가공.

## 2.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 ■ 최저임금수준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030원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5.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20〉 최저임금 영향률 국제비교(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근로자 비중
OECD	5.5
한국	14.7
미국	4.3
프랑스	8.2
영국	8.3
일본	2.0

※자료: OECD,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2015.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내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6년 기준 18.2%로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7년에 11.9%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21〉 연도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및 영향률

(단위: 개소, 명, %)

적용연도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	최저임금대상근로자	영향률
2007	3,204,809	14,968,000	1,784,000	11.9
2009	3,262,925	15,882,000	2,085,000	13.1
2012	3,355,470	17,048,000	2,343,000	13.7
2013	3,470,034	17,510,000	2,582,000	14.7
2014	3,602,476	17,734,000	2,565,000	14.5
2015	3,676,876	18,240,000	2,668,000	14.6
2016	3,812,820	18,776,000	3,420,000	18.2

※주: 적용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전산업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2016.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 근로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은 8,779원으로, 정규직의 68.4%(12,828원)로 나타남
  -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12,827원으로 2004년(7,856원)에 비해 63.3%(4,972원) 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8,779원으로 2004년(6,136원) 대비 43.1%(2,643원) 증가하였음
-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은 14,257원으로 정규직의 66.1%(21,568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14년 8월 기준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은 21,568원으로 2004년(13,005원)에 비해 65.8%(8,563원) 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14,257원으로 2004년 8월(9,600원) 대비 48.5%(4,657원) 증가하였음
-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59.5%로 2006년(59.2%), 2008년(58.0%), 2012년(59.0%)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비정규직간 임금수준은 2014년 8월 기준 61.6%로 2006년(54.3%), 2008년(56.2%), 2012년(59.0%)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2014년 8월 기준 40.7%로 나타나 2012년 이후 다소 개선되고 있음

〈표2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변화(시간당 평균임금 기준)

(단위: 원, %)

년도	중소규모			대규모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 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 수준	
2004.8	7,856	6,136	78.1	13,005	9,600	73.8	41.6
2005.8	8,260	6,165	74.6	13,900	10,462	75.3	40.8
2006.8	8,692	6,440	74.1	14,692	11,854	80.7	39.1
2007.8	9,226	6,898	74.8	16,036	12,375	77.2	38.5
2008.8	9,981	7,162	71.8	17,199	12,751	74.1	36.9

년도	중소규모			대규모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 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임금 수준	
2009.8	10,504	6,909	65.8	17,693	10,796	61.0	36.6
2010.8	11,007	7,366	66.8	19,058	11,992	62.9	38.2
2011.8	11,639	7,992	68.7	19,635	14,203	72.3	38.6
2012.8	12,085	8,281	68.5	20,487	14,040	68.5	38.3
2013.8	12,555	8,598	68.5	21,099	15,214	72.1	38.6
2014.8	12,828	8,779	68.4	21,568	14,257	66.1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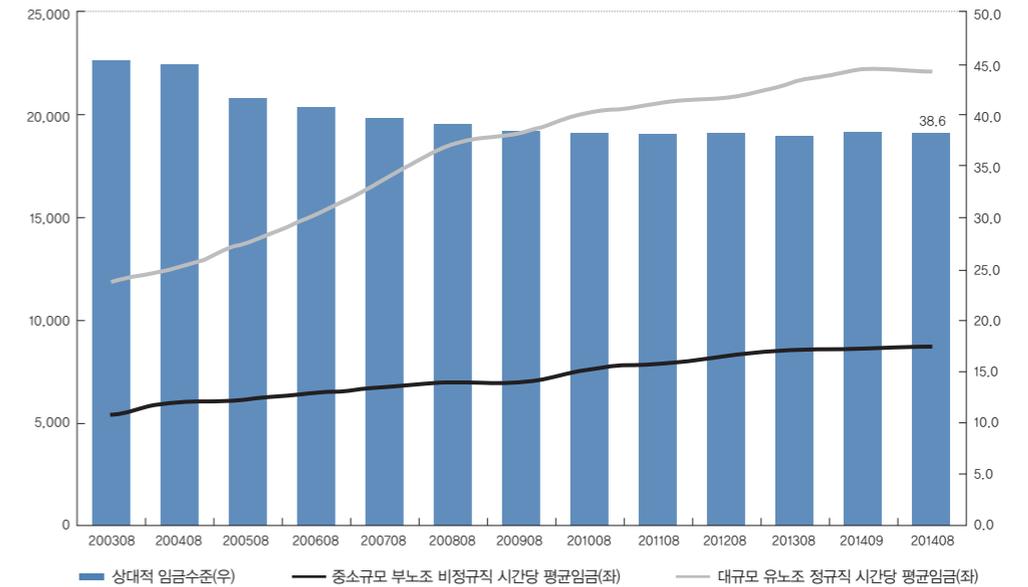
※주: 비고는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그러나 대규모 유노조 사업체의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무노조 사업체의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에 불과해 10년 전 수준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7] 대규모 유노조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상대임금수준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기업규모별 근로조건

#### ■ 근속연수

- 기업규모별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는 4.9년으로 대규모사업체(10.7년)에 비해 짧게 나타남
- 유노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속연수는 2014년 8월 기준 3.4년으로 무노조 사업체의 근속연수(2.2년)에 비해 1.2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유노조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속연수는 11.2년으로 무노조 사업체의 근속연수(4.7년)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음
- 유노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속연수는 2014년 8월 기준 3.4년으로 무노조 사업체의 근속연수(2.2년)에 비해 1.2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유노조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근속연수는 13.1년으로 무노조 사업체의 근속연수(9.1년)에 비해 4.0년 긴 것으로 나타남
- 무노조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비정규직의 근속연수 격차는 1.6년, 유노조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비정규직의 근속연수 격차는 0.9년, 무노조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근속연수 격차는 4.4년, 유노조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비정규직의 근속연수 격차는 1.9년으로 각각 나타남

〈표23〉 기업규모별 평균 근속연수 변화

(단위: 년)

년도	중소규모					대규모				
	전체	비정규/무노조	비정규/유노조	정규/무노조	정규/유노조	전체	비정규/무노조	비정규/유노조	정규/무노조	정규/유노조
2004.8	3.7	15	3.8	37	93	9.2	39	54	97	107
2005.8	3.8	16	3.5	39	1.95	9.4	34	58	95	113
2006.8	3.8	16	3.8	38	95	9.6	40	62	92	115
2007.8	3.9	17	3.7	37	99	9.8	43	65	82	119
2008.8	4.1	17	3.2	38	102	9.8	39	45	76	124
2009.8	4.2	16	2.2	41	110	9.7	23	32	80	124
2010.8	4.3	18	2.7	42	108	10.1	28	39	87	124

년도	중소규모					대규모				
	전체	비정규/무노조	비정규/유노조	정규/무노조	정규/유노조	전체	비정규/무노조	비정규/유노조	정규/무노조	정규/유노조
2011.8	45	19	32	43	112	10.0	41	41	84	125
2012.8	46	21	32	45	113	10.6	35	36	90	128
2013.8	49	22	34	47	116	10.6	41	43	85	130
2014.8	49	22	34	47	112	10.7	38	43	91	1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복지수준

- 기업규모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60%대로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국민연금 가입률의 경우 중소기업은 2014년 8월 기준 64.1%로 2004년(54.5%) 대비 9.6%p 늘었으며, 대기업 사업체의 경우 0.5%p 증가함
  - 건강보험 가입률은 중소기업이 2014년 8월 기준 67.9%로 2004년(56.5%) 대비 11.4%p 늘었으며, 대기업 사업체의 경우 0.7%p 증가함
  - 고용보험 가입률은 중소기업이 2014년 8월 기준 65.5%로 2004년(48.2%) 대비 17.3%p 늘었으며, 대기업 사업체는 2014년 8월 기준 95.7%로 2004년(79.7%) 대비 16.0%p 증가하였음
- 복지수혜율과 노조조직률 또한 기업규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8월 기준 중소기업의 복지수혜율은 시간외수당 수혜율의 경우만 50%를 상회하고, 이 또한 2004년 대비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의 퇴직금 수혜율, 상여금 수혜율, 시간외수당 수혜율, 유급휴가 수혜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복지수혜율은 시간외수당 수혜율만 80% 초반에 정체를 보이고 나머지 복지수혜율은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조조직률의 경우 중소기업은 8.9%로 2004년(9.1%)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체는 38.1%로 2004년(36.3%) 대비 1.8%p 증가함

〈표24〉 기업규모별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 변화

(단위: %)

구분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8	2012.8	2013.8	2014.8	
국민연금 가입률	중소규모	54.5	56.5	58.2	59.1	60.3	60.6	61.0	61.5	62.7	63.7	64.1
	대규모	95.1	95.1	95.1	95.0	95.5	94.4	95.6	93.9	95.5	95.5	95.6
건강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56.5	57.0	58.9	60.4	61.7	63.2	63.4	64.9	66.5	67.9	67.9
	대규모	95.6	95.2	95.3	95.6	95.8	95.1	96.0	95.2	96.2	96.8	96.3
고용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48.2	49.1	51.0	52.1	54.0	56.3	60.0	61.5	62.9	64.4	65.5
	대규모	79.7	80.7	81.1	79.7	78.0	77.5	93.7	93.4	95.1	95.5	95.7
퇴직금 수혜율	중소규모	51.3	51.4	50.4	47.1	42.8	42.6	40.8	38.8	37.0	35.5	35.4
	대규모	91.7	91.7	90.8	93.1	93.7	90.7	93.2	92.6	94.5	94.7	94.5
상여금 수혜율	중소규모	53.8	53.5	51.7	48.7	48.0	43.0	38.9	38.2	36.8	33.8	34.0
	대규모	90.0	90.5	90.1	91.8	91.4	89.5	92.4	90.6	92.7	93.4	93.1
시간외수당 수혜율	중소규모	62.4	62.5	63.1	61.9	62.8	61.5	60.4	60.7	59.9	57.5	57.4
	대규모	84.4	85.4	82.4	82.7	82.3	77.7	82.6	78.6	83.3	84.3	83.6
유급휴가 수혜율	중소규모	60.2	61.1	61.8	55.3	52.3	47.7	45.6	48.6	46.6	44.5	44.4
	대규모	87.6	87.1	83.9	88.9	88.9	91.3	92.5	92.0	92.5	93.1	93.4
노조 조직률	중소규모	9.1	8.4	8.0	8.8	8.8	8.9	8.3	8.1	8.2	8.8	8.9
	대규모	36.3	34.6	35.5	37.1	38.3	35.7	35.9	33.2	36.0	38.4	38.1

※자료: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0년부터 통계청 보도자료와 일치하지 않음. 이는 2010년부터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 사회보험 가입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최근 10년간 4대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34.3%→35.9%, 건강보험은 36.9%→42.5%, 고용보험은 33.1%→41.7%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사업체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률의 경우 국민연금은 80.9%→77.0%, 건강보험은 83.5%→79.1%로 감소하였으며, 고용보험은 76.0%→79.4%로 증가하였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복지수혜율은 퇴직금이 71.4%→68.8%, 상여금이 66.3%→64.7%, 시간외수당이 62.3%→55.1%, 유급휴가는 34.0%→31.1%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노조조직률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체는 최근 10년간 4.1%→2.4%로 줄어들었으며, 대규모 사업체는 19.4%→14.7%로 감소하였음

〈표25〉 기업규모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혜율, 노조조직률 변화

(단위: %)

구분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8	2012.8	2013.8	2014.8	
국민연금 가입률	중소규모	34.3	33.5	35.1	37.3	36.4	35.9	35.9	36.0	36.9	37.1	35.9
	대규모	80.9	79.6	80.9	81.1	79.6	74.5	76.2	74.4	77.0	75.4	77.0
건강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36.9	34.6	37.0	39.9	39.0	41.1	40.2	42.0	43.5	44.1	42.5
	대규모	83.5	79.9	81.6	82.3	80.7	79.3	77.8	79.2	80.3	80.8	79.1
고용보험 가입률	중소규모	33.1	31.6	33.4	36.6	37.0	40.6	39.2	40.3	41.5	41.7	41.7
	대규모	76.0	73.9	76.3	77.7	74.5	75.6	75.6	78.4	79.5	77.8	79.4
퇴직금 수혜율	중소규모	28.4	25.9	27.5	32.1	33.4	31.4	34.4	36.7	37.9	38.2	37.6
	대규모	71.4	68.2	69.7	75.5	71.5	54.1	62.7	66.8	69.8	67.6	68.8
상여금 수혜율	중소규모	24.7	22.6	24.8	28.4	25.6	28.4	34.1	33.9	35.0	38.7	38.1
	대규모	66.3	65.1	67.3	72.1	64.6	52.7	61.3	62.3	63.4	65.9	64.7
시간외수당 수혜율	중소규모	19.2	18.2	18.8	21.4	18.6	19.0	21.0	20.5	21.5	22.8	22.3
	대규모	62.3	60.1	58.5	59.9	54.5	42.7	50.5	47.7	53.1	60.8	55.1
유급휴가 수혜율	중소규모	21.5	19.8	20.4	26.0	25.4	29.6	31.7	28.2	30.2	30.9	29.6
	대규모	34.0	38.1	38.7	30.0	30.6	34.3	32.9	31.9	33.7	31.9	31.1
노조 조직률	중소규모	4.1	3.7	3.5	4.2	3.5	2.1	2.5	2.2	2.5	2.4	2.4
	대규모	19.4	16.4	15.6	18.4	18.3	8.8	8.9	9.8	11.1	13.0	1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IV 대·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

- 기업규모별 인력 부족률은 중소기업(2.98%)이 대기업(1.14%)보다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완화되었지만,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26〉 기업규모별 인력 부족률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대기업	1.41	1.18	1.23	1.18	1.02	1.01	1.14
중소기업	3.63	3.45	3.29	3.03	2.70	2.70	2.98
전체	3.13	3.00	2.88	2.66	2.38	2.38	2.61

※주: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재인원+부족인원))×10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1. 개요

- 최근 들어 인력 부족률과 인력 미충원율은 2016년 상반기 들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인력 부족률은 2016년 상반기 기준 2.61%이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2.98%)이 대기업(1.1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14년 기준 2.3%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인력 부족률 감소 현상은 고용환경 개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들의 인력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2. 인력 부족률

### ■ 복지수준

- 2016년 상반기 기준 인력 부족률은 2.61%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함

-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3.2%)은 대기업(0.4%)과 비교하여 8배 높게 나타남

〈표27〉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기업	1.41	1.18	1.23	1.18	1.02
중견기업	2.2	1.9	1.2	1.3	0.7
중소기업	3.63	3.45	3.29	3.03	2.70
전체	3.13	3.00	2.88	2.66	2.38

※주: 1.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2. 연도별 통계는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임(2014년 통계는 2015년에 조사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 종업원규모별

- 2016년 상반기 기준 인력 부족률을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10~29인 기업(2.93%), 30~99인 기업(2.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종업원 규모별로 인력 부족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

〈표28〉 종업원 규모별 인력 부족률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5~9인	5.01	4.81	4.43	4.07	3.87	3.66	4.22
10~29인	3.92	3.50	3.22	3.01	2.59	2.97	2.93
30~99인	3.21	2.93	2.84	2.64	2.19	2.02	2.47
100~299인	2.32	2.52	2.74	2.27	2.29	2.22	2.28
300인 이상	1.41	1.18	1.23	1.18	1.02	1.01	1.14
전체	3.13	3.00	2.88	2.66	2.38	2.38	2.61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14년 기준 1.48%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의 인력 부족률(1.85%)은 중기업(0.82%)보다 높았고, 소기업은 2011년에 인력 부족률이 높아졌다가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중기업은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표29〉 종업원 규모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2.51	3.01	3.03	2.59	1.48
소기업	3.34	3.71	4.01	3.10	1.85
중기업	0.93	1.69	1.14	1.61	0.82
5~9인	4.76	4.42	6.07	3.77	2.46
10~19인	3.59	3.77	3.34	3.44	2.00
20~49인	2.06	3.07	3.00	2.40	1.30
50~99인	1.24	2.20	1.34	1.97	1.22
100~199인	0.85	1.56	1.14	1.68	0.54
200~299인	0.35	0.91	0.75	0.51	0.43

※자료 : 연도별 통계는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임(2014년 통계는 2015년에 조사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치임)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각연도.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014년 기준 종업원 10~29인 기업의 경우 4.9%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30~99인 기업의 경우 3.0%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모두 전년 대비 인력부족률이 감소함

〈표30〉 종업원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0~29인	9.9	6.9	5.0	4.6	4.9
30~99인	6.0	4.6	3.6	3.0	3.0
100~299인	4.3	3.8	1.9	2.0	1.3
300~500인	2.2	1.9	1.2	1.3	0.7
500인 이상	0.8	1.0	0.4	0.6	0.4
전체	4.3	3.4	2.6	2.4	2.3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 직종별

● 2016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단순생산직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직(3.1%), 사무직(1.8%), 관리직(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순생산직의 인력 부족률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하여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표31〉 직종별 인력 부족률 변화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관리직	0.4	0.7	0.5	0.6	0.4	0.3	0.7
사무직	1.9	2.0	1.7	1.6	1.4	1.4	1.8
영업직	3.0	3.0	2.5	2.7	2.8	2.6	3.1
단순생산직	5.2	5.1	5.4	4.3	3.6	3.1	3.8
전체	3.13	3.00	2.88	2.66	2.38	2.38	2.61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판매직의 인력 부족률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직(2.58%), 연구직(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직과 기술직의 인력 부족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32〉 직종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단위: %)

구분	전체	사무	연구	생산				서비스	판매
				소계	기술	기능	단순		
2010	2.51	0.93	3.65	3.07	3.06	3.30	2.86	2.14	2.83
2011	3.01	1.47	5.43	3.54	4.74	3.89	2.99	0.66	2.53
2012	3.03	1.49	4.40	3.57	4.76	3.08	3.68	1.33	3.51
2013	2.59	0.93	3.14	3.30	4.06	2.99	3.24	1.67	2.85
2014	1.48	0.77	1.88	1.80	2.58	1.49	1.61	1.40	3.23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각연도.

● 2014년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채굴 관련 기능직이 12.3%로 가장 높았음

- 관리직 종사자의 인력 부족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관련 종사자의 경우도 인력 부족률이 높지 않았음
- 장치, 기계조사·조립 종사자의 인력 부족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3〉 직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률(2014년)

(단위: %)

구분	부족률	
관리직	11 공공·기업 고위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 전기·생산 관련 관리직	-
전문가 ·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관련직	1.9
	22 정보통신 전문가·기술직	2.3
	23 공학 전문가·기술직	1.5
	26 법률·행정 전문직(261 법률전문가만 포함)	0.7
가능원 · 관련 기능 종사자	27 경영, 금융 전문가·관리직	1.9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관리직	3.4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1.2
장치 기계조작 · 조립 종사자	75 운송·기계 관련 기능직	1.4
	76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1.3
	77 건설·채굴 관련 기능직	12.3
	78 영상·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0.9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전체	82 섬유·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3.1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3.9
	84 금속·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3.4
	85 기계제조·관련 기계조작직	3.2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2.2
	87 철도 및 전기 기관사	-
	88 상·하수도·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89 목재, 인쇄·기타 기계조작직	3.5
전체	2.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 2015.

### 3. 인력 미충원율

#### ■ 기업규모별

- 인력 미충원율은 2016년 상반기 기준 11.05%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2.70%로 대기업(3.83%)보다 3.3배 높게 나타남

〈표34〉 기업규모별 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대기업	5.94	7.86	6.32	5.74	4.81	4.29	3.83
중소기업	21.60	23.98	18.02	15.63	13.12	13.52	12.70
전체	18.45	21.28	16.05	14.05	11.86	10.69	11.05

※주: 미충원율=(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산업기술인력의 미충원율은 2014년 기준 10.8%로 전년 대비 1.0%p 증가
-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2.3%로 전년 대비 1.6%p 늘었으며,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미충원율 격차가 크게 벌어짐

〈표35〉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중소기업	11.4	10.7	12.3
중견기업	10.0	8.9	5.1
대기업	5.4	4.9	5.0
전체	10.4	9.8	1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 2015.

#### ■ 종업원 규모별

- 종업원 규모별 인력 미충원율은 종업원 30~99인 기업의 미충원율이 1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00~299인 기업(12.91%), 5~9인 기업(12.26%), 10~29인(1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3.83%에 불과

〈표36〉 종업원 규모별 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5~9인	22.74	25.70	16.05	15.60	13.51	12.76	12.26
10~29인	22.38	22.88	17.59	14.72	12.46	11.18	12.25
30~99인	23.63	25.18	20.75	16.03	12.36	11.61	13.53
100~299인	15.64	21.86	17.14	16.62	14.93	12.50	12.91
300인 이상	5.94	7.86	6.32	5.74	4.81	4.29	3.83
전체	18.45	21.28	16.05	14.05	11.86	10.69	11.05

※주: 미충원율=(미충원인원/구인인원)×10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종업원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은 종업원 규모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남
  - 종업원 10~29인 기업의 미충원율이 14.0%로 가장 높았으며, 30~99인 기업(12.7%), 100~299인 기업(9.3%), 300~499인 기업(5.1%), 500인 이상 기업(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종업원 10~29인 기업은 2.3%p, 30~99인 기업은 1.4%p, 100~299인 기업은 0.8%p씩 미충원율이 증가함
  - 반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은 전년 대비 감소 또는 비슷하게 나타남

〈표37〉 종업원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10~29인	12.1	11.7	14.0
30~99인	11.2	11.3	12.7
100~299인	10.4	8.5	9.3
300~499인	10.0	8.9	5.1
500인 이상	5.4	4.9	5.0
전체	10.4	9.8	10.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보고서, 2015.

#### ■ 직종별

- 2016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인력 미충원율은 단순생산직이 15.66%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직(10.02%), 관리직(9.99%), 사무직(9.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직종에서 인력 미충원율이 2015년 대비 증가

〈표38〉 직종별 인력 미충원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관리직	7.83	17.11	10.30	10.47	5.38	4.79	9.99
사무직	14.16	14.88	9.58	9.70	8.68	8.69	9.09
영업직	15.12	17.51	11.75	10.09	10.47	9.22	10.02
단순생산직	22.91	23.76	19.83	17.68	14.79	14.70	15.66
전체	18.45	21.28	16.05	14.05	11.86	10.69	11.05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4. 인력 이직률

### ■ 기업규모별

- 인력 이직률은 2016년 상반기 기준 4.0%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2013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직율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상반기에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표39〉 기업규모별 인력 이직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
대기업	3.9	4.4	4.2	3.1	3.1	3.8	3.0
중소기업	4.6	5.2	5.4	4.8	5.0	5.1	4.2
전체	4.5	5.0	5.2	4.5	4.7	4.9	4.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연도

### ■ 종업원 규모별

- 중소기업의 인력 이직률은 2014년 기준 12.2%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종업원 규모별로는 중기업의 인력 이직률(12.4%)이 소기업(12.1%)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2012년 이후 소기업보다 중기업의 인력 이직률이 높게 나타남
  - 종업원 50~99인 기업의 인력 이직률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종업원 20~49인 기업과 100~299인 기업(12.5%), 5~9인 기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0〉 종업원 규모별 중소기업 인력 이직률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소기업	10.1	18.6	13.1	14.8	12.1
중기업	9.9	16.8	13.7	15.6	12.4
5~9인	11.4	21.3	14.2	15.2	12.0
10~19인	10.0	17.9	12.6	14.8	11.6
20~49인	9.2	16.9	12.6	14.6	12.5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0~99인	10.3	17.0	14.2	16.1	13.0
100~199인	9.9	19.0	13.7	16.3	12.5
200~299인	8.9	12.6	12.4	12.9	10.8
전체	10.0	18.0	13.3	15.1	12.2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각연도

### ■ 직종별

- 중소제조업의 인력 이직률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단순 노무직의 인력 부족률이 17.4%로 가장 높았음
  - 서비스 종사직(13.7%), 기능직(13.3%), 판매직(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구직과 기술직의 인력 이직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41〉 직종별 중소기업 인력 이직률

(단위: %)

년도	전체	사무 관리직	연구직	생산			서비스 종사직	판매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2010	10.0	6.0	9.0	10.5	12.3	11.2	19.2	10.8
2011	18.0	13.4	13.8	16.8	23.3	20.0	13.8	12.0
2012	13.3	7.8	11.0	11.9	15.6	17.0	15.8	10.4
2013	15.1	9.2	9.4	13.2	16.7	21.9	9.1	10.3
2014	12.2	7.6	7.6	9.1	13.3	17.4	13.7	13.3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각연도

## 5. 핵심인력 이직 현황

### ■ 핵심인력 이직 피해 경험

-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하여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일반 중소기업(35.4%)이 혁신형 중소기업(34.1%)에 비해 피해 비중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기업(35.2%)이 비수도권 소재기업(33.9%)에 비해 경영상 피해를 더 입은 것으로 나타남

〈표42〉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비중

(단위: 개사%)

구분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합계	
관리직	일반 중소기업	23(35.4)	42(64.6)	65(100.0)
사무직	혁신형 중소기업 <sup>1)</sup>	46(34.1)	89(65.9)	135(100.0)
영업직	수도권 소재기업	31(35.2)	57(64.8)	88(100.0)
단순생산직	비수도권 소재기업	38(33.9)	74(66.1)	112(100.0)
전체		69(34.5)	131(65.5)	200(100.0)

※자료 : 노민선,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 현황 및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4.

### ■ 핵심인력 이직 건수 및 피해금액

- 피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1.9건의 핵심인력 이직과 핵심인력 이직 1건당 평균 2.7억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2.0건, 3.1억원)이 일반 중소기업(1.7건, 2.0억원)에 비해 이직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큰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 중소기업(2.1건, 3.4억원)이 비수도권 중소기업(1.8건, 2.2억원)에 비해 이직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남

### ■ 핵심인력 퇴사시 대체인력 양성비용

- 핵심인력 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1인당 평균 4,607만원의 양성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5,083만원)이 혁신형 중소기업(4,370만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기업(5,297만원)이 수도권 중소기업(3,761만원)에 비해 소요비용이 크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중소기업(2.1건, 3.4억원)이 비수도권 중소기업(1.8건, 2.2억원)에 비해 이직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남

1)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의미

## VI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sup>2)</sup>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의 경영성과 공유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임금 또는 복지수준의 현실화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경영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영 성과를 활용한 합리적 보상시스템은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과 유지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임금, 복지수준, 노동생산성, 인력수급 등 대-중소기업간에 발생하는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2) 저자가 작성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2016)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 1.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급의 범위를 세액공제 대상(〈표-43〉 참조)으로 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와 동일한 공제율(10%) 적용
- 일부 개인이나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예 : 10%)을 세액공제 한도로 설정할 필요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조특법 제132조)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프랑스의 경우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기업들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증가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

### ■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청년의 경우 100%, 청년 이외의 경우 5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와 동일한 수준
- 서비스 종사직(13.7%), 기능직(13.3%), 판매직(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구직과 기술직의 인력 이직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프랑스의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 사회보장부담금(cotisations de securite social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납부의무 면제
  - ※ 영국의 경우 주식인센티브제도(Share Incentive Plan, SIP)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 납부의무 면제

###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

- 소득세에 대한 지원혜택으로는 분리과세의 적용\*이나 소득세 감면\*\* 방식 검토

- ※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표준별로 최소 6%에서 최대 38%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경영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일정금액(예 :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 소득세율(6~38%)과 분리과세 세율(14.0%, 금융소득 기준)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
- ※※ 분리과세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제29조의 6)과 같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 검토
- ◎ 중소기업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 ※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종업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표43〉 법인세법상 성과급의 범위(시행령 제20조 제1항)

범 위	요 건	특이사항
성과배분 상여금	·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임원 제외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관련 사항 결정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이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성과급	·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지급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이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 2.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 ■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컨설팅 실시

- ◎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2항)
- ◎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추진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 절차 마련

- ◎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
- ◎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 현황을 직접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3.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공유제 개선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전용의 복지 프로그램 도입

- ◎ 중소기업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의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
- ◎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칭) 중소기업 핵심인력 복지카드 발급
  - 복지카드를 통해 숙박, 주유, 통신, 쇼핑, 교육, 식음료, 교통, 놀이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또는 우대 서비스 제공
- ◎ 정부 출연 등을 기금 조성 과 수익을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 여행 및 휴양시설, 의료기관, 법률상담, 보험, 교육 등

###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 ◎ 발명자인 중소기업 임직원이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를 허용하는 직무발명보상의 범위를 등록보상\*에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모든 직무 발명보상으로 확대(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
-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은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재소독 46073-181, 2002.12.30.)

## 4.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세지원의 안정적 운영

-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상생협력 조세지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 수준에서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조세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항목 중에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 조특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조특법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의 배제적용 대상에서 제외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각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
- 고용노동부. (각연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노민선. (2014).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 현황 및 장기재직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노민선. (2016).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각연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 중소기업중앙회. (2016). 중소기업위상지표.
- 중소기업중앙회. (2015). 2015년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중소기업청. 각연도. 중소기업실태조사.
- 최저임금위원회. (2016). 201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 통계청. (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 통계청. (각연도). 광업·제조업 조사.
- 통계청. (각연도). 전국사업체조사.
- 한국생산성본부. (2015). 2015 기업규모별·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 한국생산성본부. (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OECD. (2015). Focus on 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 Making them pay.

## 제2장 인구고령화, 빈곤진입률, 그리고 노령층의 취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었던 급속한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 37%의 인구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일본에 제외하면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기 발생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본고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현재에도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절대적 빈곤층에 진입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2006년 기준 55~60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진입하는 2015년에 가구원수에 따라 6.06%~10.79%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인 이하의 비빈곤층 가구로 파악된 924,633개 가구 중 약 56,038개의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가구원수가 2인 이하로 줄어들 경우 329,611개의 비빈곤층 가구 중 약 35,570개의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대(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를 확장해 적용할 경우 더욱 많은 비빈곤층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파악되고 있어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패널조사와 같은 다른 패널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이러한 빈곤진입률이 유지되며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절대적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중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취업대책을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의 정책은 조기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정책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노년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정년제의 연장뿐만 아니라 폐지 등을 통해 노년층의 취업 및 노동 기회를 본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I 연구배경

##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구고령화를 측정

- 노령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노령의존비(Old-Age Dependency Ratio)과 노령화지수(Aging Index)라는 두가지 공식을 중심으로 측정이 시도
- 노령의존비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노동가용인구인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수에 대비시키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수식 (1)을 따름

$$\text{노령의존비} = \frac{65 \leq \text{인구}}{15 \leq \text{인구} < 65} \times 100 \quad (1)$$

- 수식 (1)의 계산을 통해 노령의존비가 50으로 측정되었다면 노동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노동인구 대비 노령층 인구의 증가를 의미
-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15세 미만의 유아인구수와 대비시키는 방식이며 산출방식은 수식 (2)를 따름

$$\text{노령화지수} = \frac{65 \leq \text{인구}}{\text{인구} < 15} \times 100 \quad (2)$$

- 수식 (2)의 계산을 통해 노령화지수가 50으로 측정되었다면 유아인구 2명당 1명의 노인이 존재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인구고령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
- 유아인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향후 노동가용인구가 감소할 것을 의미해 노령의존비의 선행지수로 고령화지수의 이해가 가능

## ■ 위에서 언급된 두가지 방식이 어떻게 인구고령화를 측정하고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는가는 그림 1이 예로 제시하고 있는 0-100세 사이의 인구분포도를 통해 설명이 가능

- 수식 (1)의 노령의존비와 수식 (2)의 노령화지수는 그림 1a에서 노랑, 파랑, 그리고 빨강으로 나타나는 세개의 나이대별 인구수를 상대적으로 대비시키는 측정방식
- 노령의존비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노동가용인구를 빨간색의 노령인구에, 그리고 노령화지수는 노란색의 유아인구를 빨간색의 노령인구에 대비시켜 각기 지수화
-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림 1b처럼 인구분포도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노령의존비와 고령화지수 모두 상승
- 또한 저출산의 문제가 동반되는 인구고령화의 경우 같은 인구분포도의 변화라도 노령의존비에 비해 유아인구와 노령인구를 대비하는 고령화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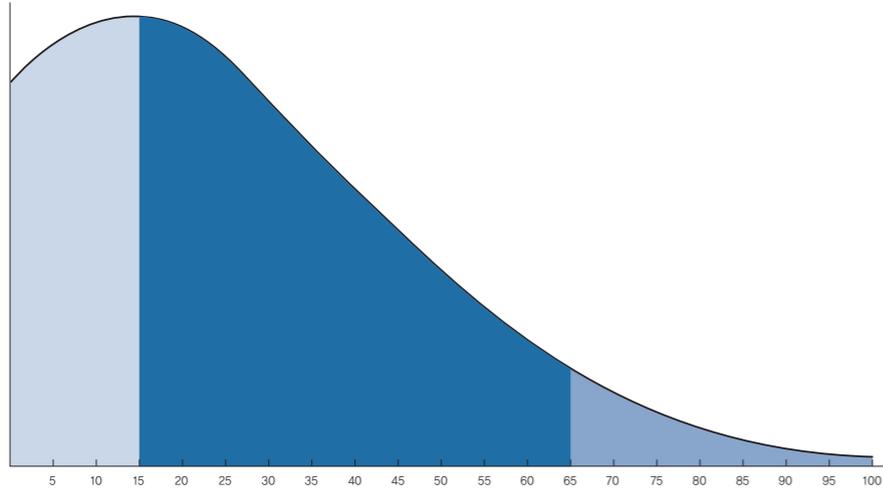
## ■ 수식 (1)와 (2)의 노령의존비와 노령화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어느 국가가 경험했던 고령화 추이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

- 그림 2는 남북유럽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스웨덴, 현재 인구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일본, 그리고 한국의 노령의존비와 노령화지수를 각각 표시\*
- 2010년 현재 한국의 인구고령화 정도는 그리스, 스웨덴,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상태로 측정
- 2050년까지 예측된 인구데이터로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측정하면 노령의존비와 노령화지수 모두에서 2030년경에 대다수의 OECD 가입국들보다도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
- 한 예로 OECD (2013b)에 따르면 그림 3와 같이 2010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기준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 대비 37%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OECD 가입국 중 일본에 이어 2위에 육박하는 규모로 노령층 비중의 급속한 증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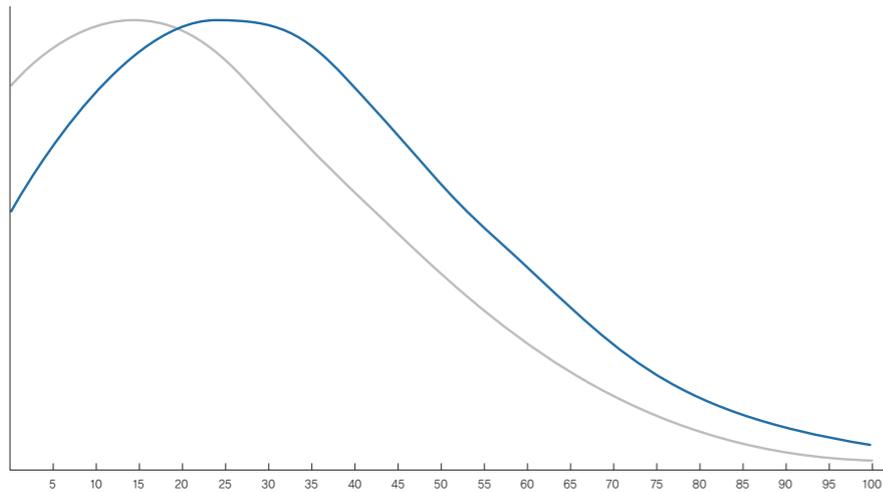
\* 그림 2은 OECD (2013a)와 OECD (2011)가 제공하는 인구 및 인구예측데이터를 적용해 직접 산출 및 작성

[그림1] 인구분포도와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a)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b) 인구분포도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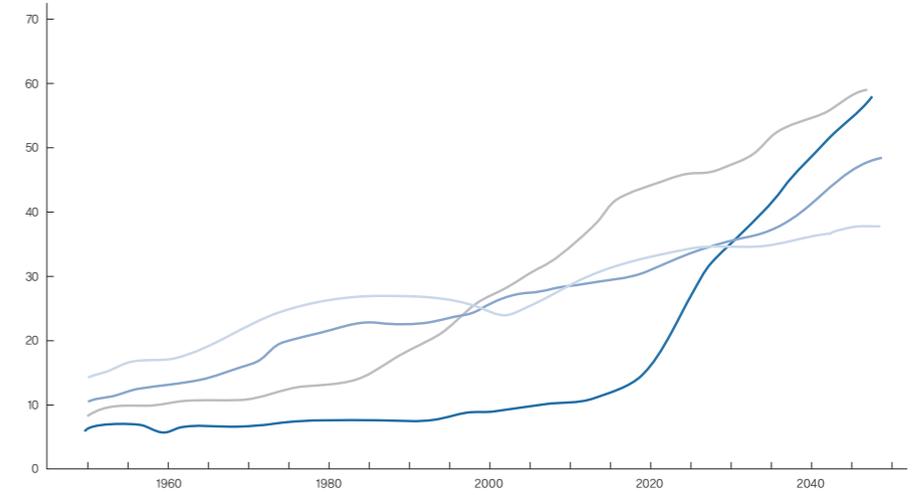


■ 2010년 기준 OECD 가입국들의 인구고령화정도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리하면 표 1와 같이 분류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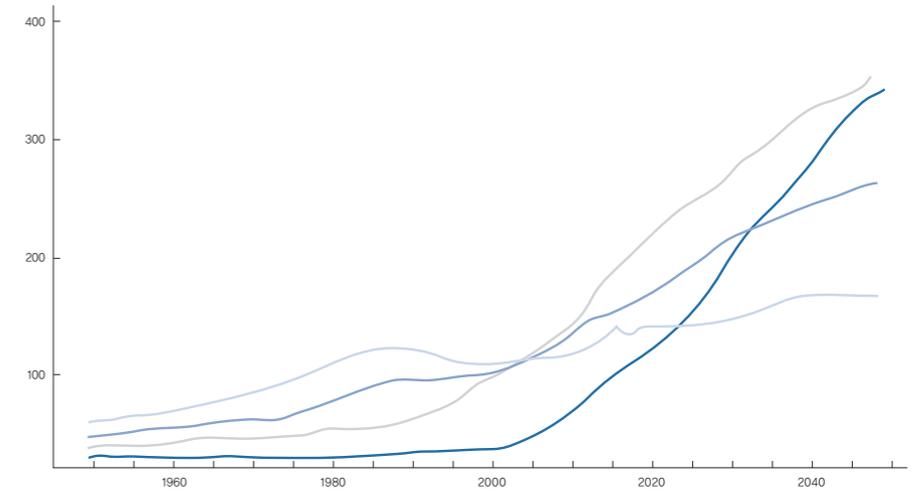
\* 표 1은 그림 2에 사용된 OECD (2013a)의 인구데이터 및 그림 3를 이용해 작성. 표 1a가 사용하는 분류방식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도록 United Nations이 정의한다고 많은 언론 및 국내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United Nations의 문서도 그러한 분류방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

[그림2] 인구고령화: 그리스, 스웨덴, 일본, 그리고 한국

(a) 노령의존비



(b) 노령화지수



● 표 1의 분류방식을 따르면 현재 한국은 가장 낮은 등급의 인구고령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및 아이슬랜드와 같은 국가와 비슷한 수준\*

\* 현재 인구고령화정도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 덴마크, 독일과 같은 OECD 가입국들은 대체로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국가

- 반면 모든 OECD 가입국이 2050년 기준 15%가 넘는 노령층의 인구 비중을 갖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노령층 인구 비중의 범위는 15%~39%로 편차가 큰 편
- 특히 2050년에 37%에 육박하는 노령층의 인구 비중을 갖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국은 일본, 스페인, 이태리 등과 함께 노령인구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장 높은 노령화 국가군에 포함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어느 국가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노령층의 빈곤 문제와 경제활동에 대한 재고가 시급한 상황

[그림3] OECD 가입국별 65세와 80세 이상 인구 비율 : 2010년과 2050년



[표1] OECD 가입국별 인구고령화 정도: 2010년과 2050년

(a) OECD 가입국별 인구고령화 정도(2010년 기준)

65세이상 인구비율	7% ~ 14%	14% ~ 20%	+20%
대상국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독일, 이태리, 일본

(b) OECD 가입국별 인구고령화 정도(2050년 예측)

65세이상 인구비율	15% ~ 25%	25% ~ 30%	+30%
대상국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미국,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칠레,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독일,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태리, 일본,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한국

■ 본고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표출될 수 있는 빈곤 진입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령층 대상의 고용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

- 2절은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가구주의 고령화가 진행되며 비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그리고 중산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절대 빈곤진입률을 산출
- 3절은 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고용 정책을 소개하고 이 정책들의 한계를 논의
- 4절은 본고에서 실시한 분석 및 논의를 최종적으로 정리·요약하고 보고서를 마무리

## II 노령화에 따른 빈곤 진입률

### ■ 최저생계비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전물량방식을 통해 계측

- Market Basket Method로 지칭되는 전물량방식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물자를 물량을 파악한 후 구입가격을 합산하는 계측방식을 의미
- 최저생계비는 3년을 주기로 전물량방식을 통해 계측되며 계측하지 않은 중간년도의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집행에 필수적인 빈곤선의 측정을 위해 산정되었으나 2015년 법개정을 통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에 따른 집행으로 변경
- 즉 절대적 빈곤선(i.e., 최저생계비)을 기반으로 집행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상대적 빈곤선(i.e., 중위소득의 50%)을 기반으로 집행되는 방식으로 변경

### ■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절대 빈곤율의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며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설정

[표2] 최저생계비의 변화 추이 (2006-2015)

(단위: 천원/월)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	32	4401	418	436	463	491	504	532	553	572	603	617
2인	537	669	701	734	784	836	858	906	942	974	1,027	1,051
3인	738	908	940	973	1,027	1,081	1,110	1,173	1,218	1,260	1,329	1,360
4인	928	1,136	1,170	1,206	1,266	1,327	1,363	1,439	1,495	1,546	1,630	1,668
5인	1,056	1,303	1,353	1,405	1,488	1,572	1,615	1,705	1,772	1,832	1,932	1,977
6인	1,191	1,478	1,542	1,610	1,712	1,817	1,867	1,971	2,048	2,118	2,234	2,286

- 최저생계비는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 중
- 4인가구 기준 2000년에 월 92.8만원이던 최저생계비는 물가인상, 경제규모의 확장 등으로 인해 2015년 현재 월 166.8만원으로 증가
- 또한 2015년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월 61.7만원으로 설정되었으나 3인 가구는 136.0만원, 6인 가구는 228.6만원으로 설정되는 등 가구원수가 증가하며 함께 증가하도록 설정

### ■ 반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절대 빈곤율과 달리 상대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이에 따라 중산층은 중위 소득의 50%와 150% 사이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

-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가구원수별 중위소득과 중산층의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와 150%를 산출하면 표 3과 같은 결과
- 하지만 표 3에서 나타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가 절대적 빈곤율의 기준선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
- 표 3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설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중산층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중산층과 최저생계비간에 중복되는 소득구간이 발생해 빈곤 진입률의 산출도 불가능

[표3] 중위 소득과 중산층 기준의 변화 추이 (2006-2015)

(단위: 천원/월)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	중산층 하한	432	456	489	461	491	511	518	528	545	576
	중위소득	864	912	978	921	963	1,021	1,036	1,066	1,089	1,152
	중산층 상한	1,296	1,368	1,467	1,382	1,474	1,532	1,553	1,583	1,634	1,729
2인	중산층 하한	853	906	963	944	1,006	1,038	1,116	1,160	1,208	1,249
	중위소득	1,706	1,812	1,926	1,888	2,011	2,076	2,231	2,320	2,417	2,499
	중산층 상한	2,559	2,718	2,889	2,832	3,017	3,113	3,347	3,479	3,625	3,748
3인	중산층 하한	1,306	1,377	1,479	1,504	1,602	1,698	1,812	1,866	1,956	2,016
	중위소득	2,601	2,754	2,957	3,008	3,205	3,395	3,623	3,732	3,913	4,031
	중산층 상한	3,902	4,132	4,436	4,512	4,807	5,093	5,435	5,598	5,869	6,047
4인	중산층 하한	1,595	1,668	1,734	1,757	1,846	1,968	2,076	2,174	2,236	2,347
	중위소득	3,190	3,316	3,469	3,515	3,692	3,936	4,151	4,348	4,472	4,694
	중산층 상한	4,786	4,974	5,203	5,272	5,538	5,904	6,227	6,521	6,709	7,042
5인	중산층 하한	1,632	1,743	1,855	1,852	1,977	2,068	2,162	2,208	2,261	2,426
	중위소득	3,265	3,486	3,710	3,704	3,955	4,116	4,325	4,415	4,522	4,851
	중산층 상한	4,897	5,229	5,565	5,555	5,932	6,174	6,487	6,623	6,783	7,277
6인	중산층 하한	1,663	1,779	1,862	2,037	2,068	2,412	2,475	2,579	2,259	2,627
	중위소득	3,326	3,557	3,724	4,074	4,137	4,825	4,950	5,159	4,518	5,254
	중산층 상한	4,989	5,336	5,586	6,111	6,205	7,237	7,425	7,738	6,777	7,881

- 따라서 불가피하게 중산층의 기준선을 측정하기 위해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산출
- 즉 표 2의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산출하는 방식(최저생계비 ÷ 0.40)을 사용해 표 4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및 중산층 기준선을 역산출
- 표 4의 중산층 하한선(기준 중위소득의 50%)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선을 의미
- 표 3와 달리 표 4에서 나타난 중산층 하한선은 표 2의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아 중복되는 소득구간이 존재하지 않아 빈곤 진입률의 산출이 가능

■ 본 절은 표 4에서 나타난 중위소득의 50%와 150%에 포함되는 중산층 가구 중 가구의 노령화와 함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 즉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절대 빈곤진입률을 산출

- 가구의 노령층 진입과 함께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가구의 파악은 향후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속한 빈곤층의 증가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 자료
- 본절은 가구의 노령화와 함께 진행되는 절대 빈곤진입률의 산출 및 파악을 위해 대표적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활용
- 두가지 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각각의 절대 빈곤진입률을 산출함에 따라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두 패널자료의 약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
- 또한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절대 빈곤진입률을 산출할 경우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와 56·65세 가구주를 각기 산출해 표본 추출로 인한 편향성 존재 여부도 고려

## 1. 한국복지패널: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

■ 노년층으로 진입하며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변화, 즉 절대적 빈곤 진입률에 대한 산출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활용

- 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 기준 56~60세의 가구주를 가진 가구들 중 2010년과 2015년 조사까지 모두 응답했던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2006년 기준 56~60세의 가구주는 2010년 기준 60~64세의 가구주, 2015년 기준 65세~69세의 가구주를 의미하며 따라서 9년의 시차를 두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진입한 연령층

[표4] 중위 소득과 중산층 기준의 변화 추이 (2006-2015: 역산출)

(단위: 천원/월)

구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	중산층 하한	405	501	523	545	579	614	630	665	691	75	754	771
	중위소득	810	1003	1,045	1,090	1,158	1,228	1,260	1,330	1,383	1,430	1,508	1,543
	중산층 상한	1,215	1,504	1,568	1,635	1,736	1,841	1,890	1,995	2,074	2,145	2,261	2,314
2인	중산층 하한	671	836	876	918	960	1,045	1,073	1,133	1,178	1,218	1,284	1,314
	중위소득	1,343	1,673	1,753	1,835	1,960	2,090	2,145	2,265	2,355	2,435	2,568	2,628
	중산층 상한	2,014	2,509	2,629	2,753	2,940	3,135	3,218	3,398	3,533	3,663	3,851	3,941
3인	중산층 하한	923	1,135	1,175	1,216	1,284	1,351	1,388	1,466	1,523	1,575	1,661	1,700
	중위소득	1,845	2,270	2,350	2,433	2,568	2,703	2,775	2,933	3,045	3,150	3,323	3,400
	중산층 상한	2,768	3,405	3,525	3,649	3,851	4,054	4,163	4,399	4,568	4,725	4,984	5,100
4인	중산층 하한	1,160	1,420	1,463	1,508	1,583	1,659	1,704	1,799	1,869	1,933	2,038	2,085
	중위소득	2,320	2,840	2,925	3,015	3,165	3,318	3,408	3,598	3,738	3,865	4,075	4,170
	중산층 상한	3,480	4,260	4,388	4,523	4,748	4,976	5,111	5,396	5,606	5,798	6,113	6,255
5인	중산층 하한	1,320	1,629	1,691	1,756	1,860	1,965	2,019	2,131	2,215	2,290	2,415	2,471
	중위소득	2,640	3,258	3,383	3,513	3,720	3,930	4,038	4,263	4,430	4,580	4,830	4,943
	중산층 상한	3,960	4,886	5,074	5,269	5,580	5,895	6,056	6,394	6,645	6,870	7,245	7,414
6인	중산층 하한	1,489	1,848	1,928	2,013	2,140	2,271	2,334	2,464	2,560	2,648	2,793	2,858
	중위소득	2,978	3,696	3,855	4,025	4,280	4,543	4,668	4,928	5,120	5,295	5,585	5,715
	중산층 상한	4,466	5,543	5,783	6,038	6,420	6,814	7,001	7,391	7,680	7,943	8,378	8,573

- 따라서 중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진입하며 2006년 기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지 않았던 가구 중 2010년 기준 혹은 2015년 기준 절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측정이 가능
- 2006년 기준 절대적 빈곤층의 설정은 표 2에서 제시된 2006년 최저 생계비를 기준선으로 활용해 가구 구성원별로 상이하게 적용 후 빈곤층을 산출
  - 또한 2010년과 2015년 기준 절대적 빈곤층의 설정도 표 2에서 제시된 2010년과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선으로 활용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후 산출

- 중산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2006년 기준 56~60세의 가구주를 가구주 중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6년 중산층 기준선안에 포함되는 중산층을 파악
- 따라서 2006년 기준 중년·중산층 중 노년층으로 진입하며 2010년 기준 혹은 2015년 기준 절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측정이 가능
  - 반면 비빈곤에서 빈곤으로의 이동과는 달리 중산층의 절대적 빈곤층 이동 분석을 위해 2006년과 2010년 조사에 함께 응답한 가구 혹은 2006년과 2015년 조사에 함께 응답한 가구를 활용
  - 이는 중산층이라는 한정된 조사군에 대한 빈곤층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비빈곤에서 빈곤으로의 이동에 적용되었는 방식과는 달리 중산층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

■ 6인가구까지 설정해 2006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5년의 절대적 빈곤 상태 변화, 즉 비빈곤에서 절대적 빈곤 진입률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은 결과

[표5]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의 노령층 진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진입률

(단위: %)

구분	2006년-2010년	2010년-2015년	2006년-2015년
2인 이하	8.85	18.12	10.79
3인 이하	5.85	12.41	7.09
4인 이하	4.83	10.76	6.38
5인 이하	4.86	10.6	6.21
6인 이하	5.08	10.37	6.06

- 표 5는 분석 대상인 가구원수를 1인씩 차감해가며, 즉 6인 이하의 가구부터 2인 이하의 가구를 각각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 즉 표 5에서 나타난 6인 이하 가구의 결과는 2~5인 이하 가구를 포함한 분석이나 2인 이하 가구의 결과는 3~6인 이하 가구를 불포함
-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며 특히 2인 가구로 진입하며 절대적 빈곤 집입률이 급속히 증가

- 이른 독거 혹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e.g., 가구분리 등으로 인해)일수록 노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빈곤 진입률이 통계청 (2015)의 발표(60세 이상 18.2%)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을 설정했기 때문
-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에 비해 소득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설정하며 노인파산 위험군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하지만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통계청 등의 발표보다 높은 빈곤 진입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독거 혹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 집중된 빈곤 진입으로 야기
- 또한 2006년→2010년보다 2010년→2015년의 빈곤 집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 상태 진입, 즉 노인파산 위험군 문제가 가구주의 고령화와 함께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

■ 노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2005년 및 2010년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가구수를 파악

- 통계청 (2005, 2010)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제공 중
- 이 중 2005년 기준 55~64세와 2010년 기준 60~69세 연령대의 가구주를 가진 가구수는 표 6과 같다고 제시 중

[표6] 55~64세(2005년 기준)과 60~69세(2010년 기준) 가구주의 연령·가구원수별 가구수 I

(a) 2005년 기준 55~64세 가구주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I

(단위: 가구수)

구분	일반가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인 이상
55~59세	1,388,332	177,063	350,998	370,623	302,717	104,017	23,646	9,368
60~64세	1,116,154	195,129	398,593	277,482	149,641	61,347	22,595	11,367
합계	2,454,486	372,192	749,491	648,105	452,358	165,364	46,241	20,735

(b) 2010년 기준 60~69세 가구주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I

(단위: 가구수)

구분	일반가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인 이상
60~64세	1,285,517	254,265	476,101	319,165	157,251	51,909	18,197	8,629
65~69세	1,078,481	272,984	459,411	201,424	80,245	37,135	18,549	8,733
합계	2,363,998	372,192	749,491	648,105	452,358	165,364	36,746	17,362

- 최저 생계비가 제시되었던 가구원수가 6명까지임을 고려해 표 6에서 7명 이상 가구를 제외하고 표 7와 같이 재구성해서 노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수를 파악

[표 7] 55~64세(2005년 기준)과 60~69세(2010년 기준) 가구주의 연령·가구원수별 가구수 II

(a) 2005년 기준 55~64세 가구주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II

(단위: 가구수)

구분	일반가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55~59세	1,378,964	177,063	350,998	370,623	302,717	104,017	23,646
60~64세	1,104,787	195,129	398,593	277,482	149,641	61,347	22,595
합계	2,433,751	372,192	749,491	648,105	452,358	165,364	46,241

(b) 2010년 기준 60~69세 가구주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II

(단위: 가구수)

구분	일반가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0~64세	1,276,888	254,265	476,101	319,165	157,251	51,909	18,197
65~69세	1,069,748	272,984	459,411	201,424	80,245	37,135	18,549
합계	2,346,636	372,192	749,491	648,105	452,358	165,364	36,746

- 즉 표 7은 표 6이 제시하고 있는 총 가구수 중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를 재구성한 수치이며 이를 이용해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수를 산출

■ 따라서 표 5의 결과를 표 7에 적용해 2006년 → 2010년, 2010년 → 2015년, 그리고 2006년 → 2015년에 비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하는 가구수를 파악하면 표 8와 같은 결과

-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가구가 가구주가 노령층에 진입하며 절대적 빈곤으로 진입하는 가구수는 표 8와 같이 산출이 가능

·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는 2005년 기준 55~59세 가구주를 의미하며 2005년 - 2006년간의 전체 가구수 변화가 미미하다는 가정 하에 표 7의 수치를 적용해 산출

- 6인 가구 이하 결과에 5인 가구 이하 등의 빈곤 이동 가구수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6인 가구 이하의 빈곤 이동 가구수가 가장 크고 2인 가구 이하의 빈곤 이동 가구수가 가장 작은 것이 원칙
- 하지만 6인 가구 이하보다 작은 가구수에서 빈곤 이동 가구가 높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복지패널의 표본 상 빈곤 가구 및 이동 가구가 2인 이하 등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현상

[표8] 가구원수별 절대적 빈곤 진입 추정: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

(a) 2006년~2010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 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527,961	198,350	329,611	8.85	29,169
3인 가구 이하	898,584	298,552	600,032	5.85	35,124
4인 가구 이하	1,201,301	366,288	835,013	4.83	40,354
5인 가구 이하	1,305,318	399,459	905,859	4.86	44,035
6인 가구 이하	1,328,964	404,331	924,633	5.08	47,015

(b) 2010년~2015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 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730,366	129,125	601,241	18.12	164,784
3인 가구 이하	1,049,531	140,165	909,366	12.41	112,816
4인 가구 이하	1,206,782	134,087	1,072,695	10.76	115,377
5인 가구 이하	1,258,691	142,551	1,116,140	10.6	118,287
6인 가구 이하	1,276,888	144,553	1,132,335	10.37	117,450

(c) 2006년~2015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 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527,961	198,350	329,611	10.79	35,570
3인 가구 이하	898,584	298,552	600,032	7.09	42,522
4인 가구 이하	1,201,301	366,288	835,013	6.38	53,299
5인 가구 이하	1,305,318	399,459	905,859	6.21	56,296
6인 가구 이하	1,328,964	404,331	924,633	6.06	56,088

- 따라서 가장 많은 표본 수에 근거해 분석이 수행된 6인 가구 이하의 가구에서 나타난 빈곤 진입률 및 빈곤 이동 가구수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산출 결과
- 표 8에 따르면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92.4만 가구 중 약 4.7만 가구가 2010년에, 약 5.6만 가구가 2015년에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
- 또한 2010년 기준 60~64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113만 가구 중 약 12.7만 가구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

■ 따라서 표 5의 결과를 표 7에 적용해 2006년~2010년, 2010년~2015년, 그리고 2006년~2015년에 비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하는 가구수를 파악하면 표 8와 같은 결과

[표9] 2006년 기준 56~60세 중산층 가구주의 노령층 진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진입률

(단위: %)

구분	2006년~2010년	2006년~2015년
2인 이하	2.33	5.88
3인 이하	1.22	4.05
4인 이하	0.85	2.91
5인 이하	0.76	2.68
6인 이하	0.75	2.61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표 9은 비빈곤에서의 빈곤 진입률을 나타낸 표 5와 달리 2006년 - 2010년 표본과 2006년 - 2015년 표본을 각기 설정해 분석한 결과
- 중산층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비빈곤층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보다 낮은 추이

- 또한 가구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는 추이가 나타나며 이는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중산층 가구가 2인 및 3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 5.88%의 중년층·중산층 2인 이하 가구가 가구주의 노령화로 인해 절대적 빈곤으로 추락한다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빈곤 문제가 2인 가구에 집중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해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를 가진 중산층을 우선 산출하고 표 9에서 나타난 절대적 빈곤 진입율을 적용하면 표 10와 같은 결과

[표10] 2006년 기준 56~60세 중산층 가구의 절대적 빈곤 진입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2006년-2010년			2006년-2015년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2인 가구 이하	112,388	233	2,614	101,992	588	6,000
3인 가구 이하	226,720	122	2,765	221,651	405	8,986
4인 가구 이하	339,936	0.85	2,881	329,957	291	9,610
5인 가구 이하	385,997	0.76	2,947	370,115	268	9,914
6인 가구 이하	393,657	0.75	2,614	377,360	261	9,844

- 중산층 중 절대적 빈곤 가구로 진입하는 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표 9의 분석에 적용된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 중 중산층 비율을 표 7에 적용해 중산층 가구수를 산출
  - 2006년 - 2010년의 이동과 2006년 - 2015년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 분석에 적용된 표본수가 상이해 중산층 비율이 변화하며 따라서 산출된 중산층 가구수도 변화
- 반면 한국복지패널은 표본추출과정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산층 비율이 불가피하며 또한 중산층이 50세 이하 가구주를 가진 가구에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집중
  - 따라서 2006년 기준 56~60세 가구주를 가진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표 10에서 나타난 중산층 가구수 또한 낮게 산출되는 결과
  - 가계동향자료 등을 이용한 대부분의 분석은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 비율이 55% - 60%라고 추론하고 있으며 이는 표 10에 적용된 비율(20% - 30%)보다 높은 수준

- 즉 표 10의 중산층 가구수 및 이동가구수를 과소평가된 수치로 해석되며 이는 표 10보다 많은 중산층 가구수 및 이동가구수가 존재한다는 의미
- 하지만 이러한 과소평가 문제는 한국복지패널을 적용한 분석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본 분석에서도 나타난 결과를 표10와 같이 그대로 보고
- 대다수 노령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3인 이하로 수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4.05%~5.88%의 가구가 중산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표 10는 제시
-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중산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절대 가구수가 급증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

## 2. 한국복지패널: 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

■ 위의 분석을 위해 적용한 표본과는 달리 한국복지패널 응답자 중 2006년 기준 56~65세의 가구주를 가진 가구들 중 2010년과 2015년 조사까지 모두 응답했던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해 동일한 분석을 시도

- 즉기존의 분석대상이었던 2006년 기준56~60세의 가구주에61~65세의 가구주를 더해분석대상으로 설정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의미
  - 2006년 기준 56~65세의 가구주는 2010년 기준 60~69세의 가구주, 2015년 기준 65세~74세의 가구주를 의미하며 따라서 9년의 시차를 두고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진입한 연령층
- 따라서 분석에 포함된 표본수를 증가시켜 분석의 신뢰성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기존 분석과 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
- 반면 2006년 기준 61~65세의 가구주가 추가되며 동일 연령층이 2010년 기준 연령층 등에 포함되는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특정 연령대만이 갖는 특수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존재

■ 이전의 분석 방식과 동일하게 6인가구까지 설정해 2006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5년의 절대적 빈곤 이동, 즉 절대적 빈곤 진입률을 살펴보면 표 11와 같은 결과

[표11] 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의 노령층 진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진입률

(단위: %)

구분	2006년→2010년	2010년→2015년	2006년→2015년
2인 이하	8.65	20.45	17.48
3인 이하	6.84	17.61	14.76
4인 이하	6.47	16.04	13.5
5인 이하	6.29	15.61	13.04
6인 이하	6.33	15.51	12.97

- 가구주의 연령대를 2006년 기준 56~65세로 설정해 수행한 표 11에서도 표 5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는 추이가 관찰
- 반면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표 5보다 표 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며 이는 2006년 기준 61~65세 가구주가 분석에 포함되며 나타나는 현상
-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절대적 빈곤 진입률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인파산 위험군으로의 전락도 증가한다는 의미
- 한 예로 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가구 중 12.97%~17.48%가 2015년에 절대 빈곤층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
- 또한 2006년→2010년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보다 2010년→2015년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현상도 관찰

■ 표 4의 기준에 따라 6인가구 중산층까지 설정해 2006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5년의 절대적 빈곤 상태 변화, 즉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을 살펴보면 표 13와 같은 결과

- 전과 동일하게 표 13는 표 11의 분석과 달리 2006년 - 2010년 표본과 2006 - 2015년 표본을 각기 설정해 분석한 결과

[표12] 가구원수별 절대적 빈곤 추정: 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

(a) 2006년→2010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1,121,683	396,119	725,564	8.65	62,751
3인 가구 이하	1,769,788	594,996	1,174,792	6.84	80,346
4인 가구 이하	2,222,146	721,783	1,500,363	6.47	97,027
5인 가구 이하	2,387,510	770,008	1,617,502	6.29	101,699
6인 가구 이하	2,433,751	779,580	1,654,171	6.33	104,756

(b) 2010년→2015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1,462,761	212,254	1,250,507	20.45	353,339
3인 가구 이하	1,983,350	255,524	1,727,826	17.61	304,195
4인 가구 이하	2,220,846	274,354	1,946,492	16.04	312,196
5인 가구 이하	2,309,890	283,465	2,026,425	15.61	316,263
6인 가구 이하	2,346,636	286,576	2,060,060	15.51	319,462

(c) 2006년→2015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1,121,683	396,119	725,564	17.48	126,847
3인 가구 이하	1,769,788	594,996	1,174,792	14.76	173,360
4인 가구 이하	2,222,146	721,783	1,500,363	13.5	202,589
5인 가구 이하	2,387,510	770,008	1,617,502	13.04	210,889
6인 가구 이하	2,433,751	779,580	1,654,171	12.97	214,506

[표13] 2006년 기준 56~65세 중산층 가구주의 노령층 진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진입률

(단위: %)

구분	2006년~2010년		2006년~2015년	
	중산층	진입률(%)	중산층	진입률(%)
2인 이하	211,268	2.06	200,722	5.88
3인 이하	383,494	1.24	381,264	4.05
4인 이하	533,110	0.96	524,828	3.72
5인 이하	592,942	0.88	578,090	3.5
6인 이하	608,438	0.87	591,064	3.43

- 또한 중산층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은 전반적으로 비빈곤층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보다 여전히 낮으나 표 9와 유사한 결과로 2006년 기준 61~65세 가구주의 추가에 의한 영향은 미미
- 여전히 가구 구성원이 적을수록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며 이는 절대적 빈곤층에 진입하는 중산층 가구가 2인 및 3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
- 5.88%의 중년층·중산층 가구가 가구주의 노령화로 인해 절대적 빈곤으로 추락한다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 빈곤 문제가 2인 가구에 집중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해 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를 가진 중산층을 우선 산출하고 표 13에서 나타난 절대적 빈곤 진입율을 적용하면 표 14와 같은 결과

- 중산층 중 절대적 빈곤 가구로 진입하는 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표 13의 분석에 적용된 2006년 기준 56~65세 가구주 중 중산층 비율을 표 7에 적용

[표14] 2006년 기준 56~65세 중산층 가구의 절대적 빈곤 진입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2006년~2010년			2006년~2015년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2인 가구 이하	211,268	2.06	4,356	200,722	5.88	11,807
3인 가구 이하	383,494	1.24	4,764	381,264	4.05	15,457
4인 가구 이하	533,110	0.96	5,126	524,828	3.72	19,541
5인 가구 이하	592,942	0.88	5,247	578,090	3.5	20,233
6인 가구 이하	608,438	0.87	4,356	591,064	3.43	20,281

- 전과 동일하게 2006년 - 2010년과 2006년 - 2016년의 표본수가 상이해 중산층 가구수도 변화하며 표 14의 결과 또한 표본추출과정에 의해 과소평가된 수치
- 표 13의 수치는 표 9과 비교해 모두 두배가 안되며 이는 추가된 2006년 기준 60~65세 가구주를 가진 가구의 중산층 비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현상
- 반면 대다수 노령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3인 이하로 수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4.05%~5.88%의 가구가 중산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표 14는 제시
- 여전히 향후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중산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절대 가구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을 요구

### 3. 한국노동패널: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연도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완전한 노령화가 진행된, 즉 2015년 기준 70~74세로 노령화된 연령층의 빈곤 진입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불가능

- 따라서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시켜 절대적 빈곤 진입에 대한 분석을 시도
- 즉 노동패널 응답자 중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를 가진 가구들 중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3년 조사까지 모두 응답했던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
  -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는 2005년 기준 60~64세 가구주, 2010년 기준 65~69세 가구주, 그리고 2015년 기준 70~74세 가구주를 의미
-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이 현재 2013년 기준 조사까지만 가용해 2013년 기준 68~72세까지의 노령화에 따른 빈곤 진입을 분석
- 즉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가 2005년 기준 60~64세 가구주, 2010년 기준 65~69세 가구주, 2013년 기준 68~72세 가구주로 노령층에 진입하며 절대적 빈곤에 진입하는 가구수의 파악을 시도

● 또한 전과 동일하게 표 2의 기준선을 적용해 절대적 빈곤층을 설정하고 중산층도 표 4의 기준선을 적용해 설정

● 따라서 비빈곤층과 2000년 기준 중산층 중 노령층에 진입하며 2005년 기준, 2010년 기준, 그리고 2013년 기준 절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측정이 가능

**■ 6인가구까지 설정해 2000년에서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3년의 빈곤 상태변화, 즉 비빈곤에서 절대적 빈곤 진입률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은 결과**

● 표 15은 한국복지패널을 적용한 분석 방식과 동일하게 가구원수를 1인씩 차감해가며 분석을 수행한 결과

● 한국복지패널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원수가 적어질수록 비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즉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

● 즉 전과 마찬가지로 2인 가구 등과 같이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일수록 노령층에 진입하며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

● 절대적 빈곤 진입률을 나타내는 수치 자체도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나 2005년→2010년의 높은 빈곤 진입률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인했을 높은 가능성

[표 15]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의 노령층 진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진입률

(단위: %)

구분	2000년→2005년	2005년→2010년	2000년→2010년	2000년→2013년
2인 이하	6.67	13.73	16.33	5.56
3인 이하	3.23	9.17	8.49	3.57
4인 이하	4.67	8.82	8.38	4.02
5인 이하	4.42	8.02	7.66	3.7
6인 이하	4.08	8.37	8.11	4.82

● 한 예로 2005년→2010년과 2000년→2010년의 경우 대부분 8%이상의 빈곤진입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0년→2010년의 2인 이하 가구는 16.33%의 빈곤진입률을 기록

● 반면 이전과는 달리 가장 긴 기간동안의 빈곤진입률을 산출한 2000년→2013년의 경우 빈곤진입률이 급속히 감소한 수치, 즉 3.7%~5.56%가 산출

**■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의 노령층 진입에 따른 절대적 빈곤 이동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2000년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가구수를 파악**

[표 16]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단위: 가구수)

구분	일반가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55~59세	1,148,197	129,209	272,905	304,584	264,296	127,402	49,801

● 통계청 (2000)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의 가구원수별 가구수는 표 16와 같으며 빈곤 이동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표 7의 수치와 함께 활용

**■ 따라서 표 15의 결과를 표 7 및 표 16에 대입해 2000년→2005년, 2005년→2010년, 2000년→2010년, 그리고 2000년→2013년에 비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하는 가구수를 파악하면 표 17과 같은 결과**

● 표 17에서도 이전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가 나타나며 분석기간을 길수록 혹은 분석기간이 최근일수록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는 경향

● 또한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6인 이하 가구보다 2인 이하 가구의 빈곤 이동 가구수가 많은 사례가 존재

●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6인 이하 가구에서 나타난 빈곤 진입률 및 빈곤 이동 가구수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산출 결과로 사료

● 표 17에 따르면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92만 가구 중 약 8.3만 가구가 2005년에, 약 7.7만 가구가 2010년에, 그리고 약 4.4만 가구가 2013년에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

● 또한 2005년 기준 60~64세 가구주를 가진 비빈곤층 104만 가구 중 약 4.2만 가구가 2010년에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

**■ 표 4의 기준에 따라 6인가구 중산층까지 설정해 2000년에서 2005년, 2010년, 그리고 2013년의 절대적 빈곤 상태 변화, 즉 중산층(중위소득 50%~150%)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을 살펴보면 표 18와 같은 결과**

- 전과 마찬가지로 표 18은 2000년 - 2005년 표본, 2000년 - 2010년 표본, 그리고 2000년 - 2013년 표본을 각기 설정해 분석한 결과
- 반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과 다르게 2000년→2013년의 분석 결과에서만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높아지는 추이가 관찰
- 또한 한국노동패널 분석을 통한 중산층의 절대적 빈곤 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과대표집이라는 표본추출과정이 한국노동패널에 부재하기 때문

[표17] 가구원수별 절대적 빈곤 진입 추정: 2000년 기준 55~59세 가구주

(a) 2000년→2005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402,114	84,666	317,458	6.67	44,566
3인 가구 이하	706,698	149,724	556,974	3.23	56,641
4인 가구 이하	970,994	183,702	787,292	4.67	76,601
5인 가구 이하	1,098,396	230,231	868,165	4.42	75,822
6인 가구 이하	1,148,197	225,875	922,322	4.08	83,160

(b) 2005년→2010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593,722	62,497	531,225	13.73	53,660
3인 가구 이하	871,204	66,448	804,756	9.17	25,960
4인 가구 이하	1,020,845	82,771	938,074	8.82	43,777
5인 가구 이하	1,082,192	80,337	1,001,855	8.02	44,281
6인 가구 이하	1,116,154	77,765	1,038,389	8.37	42,383

(c) 2000년→2010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402,114	84,666	317,458	16.33	43,573
3인 가구 이하	706,698	149,724	556,974	8.49	51,099
4인 가구 이하	970,994	183,702	787,292	8.38	69,467
5인 가구 이하	1,098,396	230,231	868,165	7.66	69,617
6인 가구 이하	1,148,197	225,875	922,322	8.11	77,199

(d) 2000년→2013년

(단위: 가구수)

구분	총 가구수	빈곤 가구수	비빈곤 가구수	빈곤 진입률(%)	비빈곤→빈곤이동가구수
2인 가구 이하	402,114	84,666	317,458	5.56	17,637
3인 가구 이하	706,698	149,724	556,974	3.57	19,882
4인 가구 이하	970,994	183,702	787,292	4.02	31,673
5인 가구 이하	1,098,396	230,231	868,165	3.7	32,154
6인 가구 이하	1,148,197	225,875	922,322	4.82	44,498

[표18] 2000년 기준 56~60세 중산층 가구주의 노령층 진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 진입률

(단위: %)

구분	2000년→2005년	2000년→2010년	2000년→2013년
2인 이하	8.33	25	5.26
3인 이하	5.36	3.45	4.08
4인 이하	5.75	2.8	2.47
5인 이하	6.31	3.31	2.91
6인 이하	6.09	5.5	2.83

- 한 예로 2000년→2005년의 경우 5.36%~8.33%의 중산층이 노령화의 진행과 함께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결과

■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해 2000년 기준 56~60세 가구주를 가진 중산층을 우선 산출하고 표 18에서 나타난 절대적 빈곤 진입율을 적용하면 표 19와 같은 결과

[표19] 2000년 기준 56~60세 중산층 가구의 절대적 빈곤 진입 추정

(단위: 가구수)

구분	2000년→2005년			2005년→2010년			2000년→2013년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중산층	진입률(%)	이동가구
2인 가구 이하	139,866	8.33	11,655	134,038	25	3,351	123,228	5.26	6,486
3인 가구 이하	271,062	5.36	14,521	261,171	3.45	9,006	247,344	4.08	10,006
4인 가구 이하	356,441	5.75	20,485	356,604	2.8	9,975	348,011	2.47	8,583
5인 가구 이하	410,512	6.31	25,888	405,679	3.31	13,448	398,362	2.91	11,603
6인 가구 이하	421,862	6.09	25,679	415,792	5.5	22,888	409,794	2.83	11,588

- 중산층 중 절대적 빈곤 가구로 진입하는 가구수를 파악하기 위해 표 18의 분석에 적용된 2000년 기준 56~60세 가구주 중 중산층 비율을 표 16에 적용
  - 반면 중산층에 대한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2000년-2005년의 이동, 2000년-2010년 이동, 2000년-2013에 적용된 표본수가 상이해 중산층 비율이 변화하며 따라서 중산층 가구수도 변화
- 하지만 중산층 비율 및 중산층의 빈곤 진입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절대적 빈곤 이동 가구수가 이전보다 높게 산출되는 결과
- 한 예로 5년이라는 같은 연령군에 대해 같은 10년의 기간차를 두고 분석을 시도했던 표 10에 비교해 약 2배 정도가 초과한 중산층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
  - 표 10의 경우 2.6천~9.8천개의 중산층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반면 19의 경우 3.3천~25.7천개의 중산층 가구가 전락
- 이는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저소득층의 과대표집이 부재해 한국복지패널에 비해 중산층 비율이 높고 동시에 절대적 빈곤 진입율도 높게 산출되기 때문

### Ⅲ 노령층을 위한 취업정책 현황

#### ■ 2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주의 노령화가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많은 비빈곤층 혹은 중산층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추이가 관찰

- 비빈곤층 가구의 경우 최대 20.45%, 중산층 가구의 경우 최대 16.33%가 가구주의 노령화가 진행되며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결과
- 급속한 노령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만일 현재와 같은 절대적 빈곤진입율이 유지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노령 절대적 빈곤층이 발생한다는 의미
- 따라서 노령층의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각종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는 청장년층 기간의 소득을 이용한 연금 등 노후자금 정책을 포함한 노령층의 소득 창출 정책을 의미
- 특히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추이를 고려하면 연금 등 노후 자금 정책이 아닌 노령층의 고용 증진을 통해 소득 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노령층 친화적 고용 정책이 필수

#### ■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장년·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고용 정책을 시행 중이며 본 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 정책을 소개

-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60+ 일하기 재취업 촉진’이라는 큰 틀하에서 약 8개의 재취업 촉진 사업을 40대 이상 혹은 50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
-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60+ 일하기 재취업 촉진’ 사업은 표 20와 같이 대상 연령층에 따라 총 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절에서는 각각의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
- 물론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령층 대상 정책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장려 정책에 국한해 소개

[표20] 중장년, 60+ 일하기 재취업 촉진

대상	구분	사업명
50세이상	1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
	2	고용연장지원금
	3	장년고용지원금
	4	고령자인재은행
	5	임금피크제 지원금
50세이상 혹은 무제한	6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7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8	사회공헌활동지원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 :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등을 지원

- 중고령자 비중이 높은 기업, 즉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을 공모를 통해 2016년 기준 60개소 내외를 선정
- 장년친화직장만들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및 진급·승진·직무체계 개선, 인사관리체계 다양화, 장년 적합직무 발굴 및 직무전환훈련, 숙련 전수 등

**고용연장지원금** :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에 정년연장지원금을 따라 지원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정년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 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재고용기간에 따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지원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으로 지원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장년고용지원금** :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월 50-65만원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의 기업
  - 인턴 채용 기업에게 인턴기간 중 최대 3개월간 50만원을, 정규직 채용은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

**고령자인재은행**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또는 공익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

- 만 50세 이상의 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을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수행
- 또한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령자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 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
  - 연 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를 제외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을 감액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을 감액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 재설계, 기업맞춤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은퇴 후 일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 퇴직인력의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즉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전액과 출석률 80% 이상의 구직자 유형 참여자에게 월 최대 31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6개월간 구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사회공헌활동 지원**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 중고령자와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의 인력 수요를 매칭

- 생계보다 사회 공헌에 관심이 많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를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기관, 행정 · 공공기관 등에 매칭

-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해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을 지급하고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1시간당 2천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 장년층 ·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8개의 고용 정책 중 6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고용연장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 나머지 6개의 고용정책의 경우 노령층보다 중장년층 중 조기 퇴직자에 초점을 맞춘 고용제 도이며 정년 이전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정책
- 따라서 정년 이후의 노령층을 위한 취업과 고용 연장에 초점을 맞춘 고용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 중
- 특히 고령화로 인한 절대 빈곤 진입률이 절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높게 유지된다면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소득 보전 효과는 제한적
-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노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설계된 취업 및 고용 연장 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
- 중장년층 기간동안 쌓여진 연금의 활용과 더불어 노령층에 특화된 취업 및 고용 연장 정책의 도입으로 절대적 빈곤진입률의 감소가 가능

# IV 결론

## ■ 본고는 한국복지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가구주의 고령화와 함께 비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 그리고 중산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한 빈곤 진입률을 산출

- 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비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빈곤 진입률은 적용된 패널조사 및 분석 대상 연령대에 따라 3.70%~20.45%로 산출
- 반면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중산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빈곤 진입률은 적용된 패널조사 및 연령대에 따라 0.75%~8.33%로 산출
- 중산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의 진입이 비빈곤층에서 절대적 빈곤층의 진입보다 낮게 나타나며 이는 상대적 빈곤층에 속해있는 가구의 경우 절대적 빈곤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즉 중위소득 40%~50%에 속했던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노년화로 인한 절대적 빈곤층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이

## ■ 통계청이 제공하는 연령대별 가구수에 절대 빈곤진입률을 적용해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면 절대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가구수를 산출

- 빈곤층을 과다 표집한 한국복지패널을 적용한, 비빈곤층의 비중이 과소 측정된 경우 적용된 연령대에 따라 35,350~214,506개 가구가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비빈곤층에서 절대 빈곤층에 진입
- 또한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중산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가구는 연령대에 따라 6,000~20,233개의 가구인 것으로 산출
- 비빈곤층 및 중산층의 비중이 과소하게 측정된 것을 고려하면 위에서 적시된 가구수보다 더 많은 가구가 실제로 절대 빈곤층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
- 한국노동패널을 적용한 경우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비빈곤층에서 절대 빈곤층으로 진입한 가구는 17,637~77,199개이며 중산층의 경우 6,486~11,603개 가구가 절대 빈곤층에 진입
-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며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절대 빈곤층에 진입하는 가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을 의미
- 1절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따라서 노년화에 따른 빈곤층 진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

##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중장년·노령층 대상의 고용 정책은 총 8개로 파악되나 이 중 2개의 고용 정책이 노년층에 특화된 정책

- 다수의 정책이 정년 이전에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정책으로 파악되고 있어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유지를 위한 고용 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
- 특히 가구주의 노년화가 진행되며 많은 가구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연금 정책 등은 노년층의 소득 보장에 제한적인 효과
- 기대 수명의 연장 등 실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고려해 연금 소득뿐만 아닌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을 통해 소득을 유지 및 보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
- 즉 정년제의 연장 뿐만 아니라 폐지 등을 통해 노년층의 취업 및 노동 기회를 본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며 노년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이 필수

## 참고문헌

- OECD. 2011.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Population Projections – Labour Force Statistics.” URL <http://www.oecd-ilibrary.org/content/data/data-00538-en>.
- OECD. 2013a. “OECD.StatExtracts: Demography and Population.” URL <http://stats.oecd.org>.
- OECD. 2013b.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 통계청. 2000. 2000 인구주택총조사. 국가통계포털.  
———. 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국가통계포털.  
———.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국가통계포털.  
———.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통계청.